

## 목 차 CONTENTS

제1장	검역업무 기본방침 _ 1
	01 검역의 개념 및 목적 ··································
제2장	검역업무 _ 7
	01 검역절차       9         가. 공항검역       9         나. 항만검역       11         다. 육로검역       15
	02 검역조사       17         가. 공항검역       17         나. 항만검역       18         다. 육로검역       19         라. 공통사항       20         마.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26
	03 검역조치       27         가.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27         나. 승무원·승객에 대한 조치       35         다. 검역증 발급       41
	04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보고42

## 2020 검역업무지침

제3장	감염병 예방업무 _ 43
	0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 4 장	행정사항 _ 65  01 증명서 발급 및 서식 관리 업무67  02 벌칙 조항72  03 기타 사항76
<b>제</b> 5장	붙임 _ 79

제6장

참고 \_ 135

- o 이 지침은 검역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o 검역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 및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o「검역법」은 "법"이라 한다.
- ㅇ「검역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 ㅇ「검역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 「검역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은 "별지 서식"이라 한다.
- o 「검역법」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한다.

# 제1장

## 검역업무 기본방침

- 1. 검역의 개념 및 목적
- 2. 관련 법령 및 지침
- 3. 검역대상 감염병
- 4.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 제1장 검역업무 기본방침

## 01

## 검역의 개념 및 목적

## 가. 개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공항과 항만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나. 목적

- 1)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콜레라 등 전통적 감염병 재출현, 해외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국가 간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 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 선박. 열차·자동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 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02

## 관련 법령 및 지침

## 가. 법령

- 1) 「검역법」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지침 등

- 1)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매뉴얼」(2018)
- 2) 「메르스(MERS) 대응지침」(2019)
- 3) 「사스(SARS) 관리지침 (2003)
- 4)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 대응 지침 (2017)
- 5)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2011)
- 6)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2009)
- 7)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019)
- 8)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지침」(2019)
- 9)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지침」(2019)
- 10) 「검역감염병 정보집」(2017)
- 11)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9)

## 03 수 검역대상 감염병(법 제2조)

-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나. '가'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 WHO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PHEIC) 선포 현황: 폴리오 1종(2017.12, 기준), 에볼라바이러스병(2019.7, 기준)

04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법 제5조, 제5조의2,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 가. 법적 기준

- 1) 질병관리본부는 아래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 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 2) 질병관리본부는 아래 가),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 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 3)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지정(선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선정)을 해제
- \*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지정(선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 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질병관리본부장 으로부터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지정(선정)하거나 해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항공사, 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

## 나. 오염지역 지정·관리 세부기준

- 1) 오염지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 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감염병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 중 치명률, 전염성 등에 대한 감염병 위기분석에 따라 오염지역으로 지정
  - 나) 위기분석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 다) 오염지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면적, 발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역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행정단위(주, 성 등)로 오염지역 지정 가능

#### 2) 검역감염병별 지정·해제 기준

가) 지정 기준

병 명	비고
콜레라	- 최근 1년 이내에 콜레라 환자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국가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콜레라 유행(100명 이상 규모)이 확인된 국가
페스트	- 위험성 기준:1건 이상 발생 및 지속적 감염발생 지역
황열	- 위험성 기준 : WHO에서 발표한 황열 위험 국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위험성 기준: 1건 이상 발생 및 지속적 감염발생 지역 * 중국의 경우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행정단위로 지정 가능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 위험성 기준 : 아라비아반도 내 1건 이상 발생 지역
폴리오	- 위험성 기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지속에 따라 1건 이상 발생 및 지속적 감염발생 지역 * 다만, 백신유래 폴리오의 경우 전염성이 낮아 모니터링 후 지정
에볼라바이러스병	- 위험성 기준: WHO 국제보건위기상황 선포 지속에 따라 1건 이상 발생 및 지속적 감염발생 지역

<sup>\* &#</sup>x27;17. 12. 6. 지정기준으로, 감염병 발생동향 및 위험성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나) 해제 기준

검역감염병이 마지막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지역

# 제2장

## 검역업무

- 1. 검역절차
- 2. 검역조사
- 3. 검역조치
- 4. 입국자 검역 조치 현황 보고

01 수 검역절차

## 가. 공항검역

- 1) 검역통보(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가) 제출 대상: 검역 장소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장
  -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다) 제출 방법: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항공사 경유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도착 30분전까지 통보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GD(General Declaration) 자료를 전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
- 2) 검역 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별표1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 실시
- 3) 검역시각(법 제11조)
  - 가) 항공기 검역시각: 도착 즉시.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검역조사 완료

- 4) 검역 전 탑승의 허가 등(법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 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항공기 검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 및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탑승 불가(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 대상)
  - 나) 검역 전 탑승의 허가
    - (1) 제출 서류
      - (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1부
      - (나) 기타 입증서류(업무 관련 입증서류)
    - (2) 검토 및 허가
      - (가)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탑승을 허가
      - (나) 허가방법:제출받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1부에 붙임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필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
        - \* 검역 전 승선 허가 여부 확인 시, 대상자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요구
  - 다) '가)' 에도 불구하고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라) 검역 전 탑승 허가대상자 발급 현황 관리
    - (1)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대장 : 붙임 제2호서식
    - (2) 허가번호: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기재예) 허가번호: 제2017-00001호
  - 마)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자 발견한 때 : 검역조사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법 제41조)

## 나. 항만검역

- 1) 검역통보(법 제9조)
  - 가) 제출 대상: 검역 장소에 접근하는 선박의 장
    - \*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대리점 대행 가능(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
  -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다) 제출 방법:도착 24시간 전까지 통보
    - \* 해운대리점 또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되, 해운대리점이 없는 요트의 경우 fax로 제출할 수 있음
- 2) 검역 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 가) 시행규칙 별표1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 실시
    - \*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 나)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이 어려운 경우
    - (3) 선박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8) 그 밖에 '(1)' ~ '(7)'까지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나)'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검역소장의 지시 없이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 또는 도착하였을 경우, 검역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
  - 라)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을 검역조사할 경우 : 검역구역 안에서 검역조사 실시
    - \* 검역구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

## 3) 검역시각(법 제11조)

- 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 실시
- 나)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 실시
  -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일몰 후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역조사 시간】

검역조사는 부두 접안검역을 실시하되, 선박화물 접안 2시간 이내 검역조사 완료

- \* 다만, 긴급 하역의 필요성 등을 검역소장이 판단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 하여 조사시간 자체결정
  - 다)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검역조사 완료
- 4) 검역 전 승선의 허가 등(법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 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 및 검역 소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승선 불가(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은 검역조사 대상)
  - 나) 검역 전 승선의 허가
    - (1) 신청대상
      - (가) 「도선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도선을 요청받은 도선사(도선수습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 \* 도선사에 대해 검역 전 탑승 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도선사운영협의회를 통해 단체로 접수할 수 있음
      -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

(2) 제출 서류

- (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1부
- (나) 도선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도선수습생의 경우 「도선법」에 의한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증서 사본)
- (다)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 면허·자격증명서 등 업무 관련 입증서류
- (3) 검토 및 허가
  - (가)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승선을 허가
  - (나) 신청자에게 1회 승선이 가능하도록 허가기간(시간)을 정하여 검역 전 승선 허가. 다만, 도선사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 가능
    - \* 도선사 대상 허가기간을 정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등 해당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허가 이후 변동사항(퇴사, 면허취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소에 통보하도록 공문 등으로 안내
  - (다) 허가방법: 제출받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1부에 붙임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필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 다만, 도선사의 경우 에는 허가필을 날인한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교부 생략 가능
    - \* 검역 전 승선 허가 여부 확인 시, 대상자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요구.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검역 전 승선을 허가받은 도선사의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허가유무를 확인 가능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검역 전 승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라) 검역 전 승선 허가대상자 발급 현황 관리
  - (1)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대장 : 붙임 제2호서식
  - (2) 허가번호: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기재예) 허가번호: 제2017-00001호
- 마)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자를 발견한 때 : 검역조사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법 제41조)

- 5) 전자 검역(법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 가) 전자 검역의 신청
    - (1)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 24시간 전까지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 제출
      - \*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장은 즉시 전자 검역 신청서 수정 제출
    - (2) 전자 검역 신청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나) 전자 검역 심사 및 통보
    - (1) 전자 검역을 신청한 선박의 최종 발항지 출발 후 전자 검역 신청서 심사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확인
      - \* 최종 발항지 출발 시간부터 우리나라 입항 시간까지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일 하루 전 심사 가능

## 【「검역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

전자 검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선박으로서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 (2) '(1)'의 심사결과 전자 검역 신청이 승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 시 전산으로 접수된 서류(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등) 최종 검토

\* 항해일지 및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등 제시 서류의 경우, 전자 검역 대상 선박 보건위생관리 시 확인

- (3) '(1) 및 (2)'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선박의 전자 검역 완료 조치
  - \* 전자 검역 심사 및 완료 조치 전,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 확인
- (4)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해당 선박에 전자 검역 미승인 사실 및 도착 후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 (5) 전자 검역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 결과 전자 검역 대상이 아닌 경우, '(3)'의 검역완료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통보
- (6) 검역소장으로부터 '(3) ~ (5)'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세관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다)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전자 검역 심사 합격 대상 선박으로부터 전산으로 접수된 해당 선박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실시

## 다. 육로검역

- 1) 검역통보(법 제9조)
  - 가) 제출 대상: 검역 장소에 접근하는 열차·자동차의 장
  -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2) 검역 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 Œ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판문점
-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 6. 그 밖에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3) 검역시각(법 제11조)

- 가) 열차·자동차(도보 포함) 검역시각: 도착 즉시.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나)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도보 포함)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검역조사 완료

## 02 👇 검역조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 가. 공항검역

-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도착 후 즉시 제출)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항공기의 장이 제출)
      - \* 항공사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가능
    -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항공기의 장이 제출)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가능
    - (3)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항공기의 장이 일괄제출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직접제출)
      - ※ 별지 제9호의2서식은 필요한 언어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참고 6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참조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다) 제시서류(도착 후 즉시 제시)
    - (1) 항공일지(항공기의 장이 제시)
    - (2)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2) 게이트검역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 (세부사항은 해당 매뉴얼 및 감염병별 대응지침 참조)

	입국장게이트 검역		주기장게이트 검역		
구분	비오염지역	오염지역	특별검역 (직항)	집중검역 (제3국 경유)	
검역 전 사전조치	_		-	<ul><li>사전 입국자 명단 파악*</li><li>필요 시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또는 선하기 요청</li></ul>	
검역방법	- 발열감시 (필요시 질문서 징구**)	- 발열감시 - 질문서 징구	- 발열감시 - 질문서 징구 - 개별체온측정	<ul><li>발열감시</li><li>질문서 징구</li><li>개별체온측정</li></ul>	
해당 감염병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인체 간 감염성 낮은 검역감염병 예) AI, 황열, 콜레라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초래 가능 감염병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검역감염병 및 신·변종 감염병 예) 메르스, 에볼라, 페스트 등		

- \* 감시기간 내 오염국가 방문자가 아닌 경우는 검역조치 대상 제외
- \*\* 제3국 경유자 자진신고, 발열 등 증상자인 경우 등
- ※ 해당 감염병의 국내유입 확산 위험도에 따라 게이트 검역조치 변경 가능

## 나. 항만검역

-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 가)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
    -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선장이 제출)
    -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선장이 제출)

## 【승무원 및 승객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방법】

- (승 객) 국내거주지 주소·전화번호, 여행사명 또는 여행사 주소·전화번호, 해운대리점 (여객선사)명 또는 해운대리점(여객선사) 주소·전화번호
- (승무원) 해운대리점(여객선사)명 또는 해운대리점(여객선사) 주소·전화번호

--참 고

(3)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선장이 일괄제출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직접제출). 다만,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6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참조

## 다) 제시서류

- (1) 항해일지(선장이 제시)
- (2)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2) 승선(보건위생관리 포함) 검역

승선(보건위생관리 포함) 검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

- 가) 검역관 근무 조 편성 시 2인 이상 검역관으로 구성
  - \* 2인 야간근무 시 검역대상 운송수단 2대 이상 입국 등 부득이한 경우 1인 수행
- 나) 구명조끼·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
- 다) 검역차량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철저(특히, 야간운전 주의)

## 다. 육로검역

1) 검역조사 관련 제출서류 등

## 가) 제출서류

-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음
-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 (3)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상태 질문서(열차·자동차의 장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제출)
  - \* 참고 6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참조

- (4)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
-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2) 검역조사 관련 제시서류
  - 가)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
  - 나)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라. 공통사항

- 1) 발열감시
  - 가) 대상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

## 나) 방법

- (1)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확인
  - \* 1차온도 측정(열감지카메라 등)에서 이상으로 감지된 승객 또는 승무원은 고막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 측정 실시
  - \* 건강상태 질문서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고막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 \*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시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국내 주소 등을 성실히 기재토록 요구
- (2) 발열자 중 검역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검역관이 검역조사 후 공중보건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다만, 공중보건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이 상주하지 않는 검역소의 경우, 긴급 상황실 또는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 역학조사관의 협조(유선 등)를 받아 조치

※ (검역조사) 붙임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 조사·분류표 작성 → (공중보건의사 또는 역학조사관 인계) 건강상태 질문서 및 통합 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해당 감염병 역학조사서 추가 작성 2) 검체채취 및 검사

가)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1) 기간: 연중

※ 콜레라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5~9월에 검체채취 강화

- (2)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채취대상 운송 수단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검역관이 현장에서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체채취 여부 결정. 다만, (가)에 해당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필수 채취
  - (가)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최종 출발한 운송수단으로서 콜레라 감시기간 이내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 (나) 최근 1년 입국 운송수단 내 감염병원균 검출현황
  - (다) 최근 1년 입국 운송수단 내 수인성 감염병 환자 등 발생현황
  - (라) 운송수단 내 전반적인 위생상태
  - (마) 해외 수인성 감염병 발생 동향
  - (바)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3) 채취 장소 및 건수 : 검역관이 위생상태 확인 후 검체 채취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1~3건 채취 (예 : 변기오수, 조리실 등)
- (4) 검사항목 등
  - (가)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 (나) 해당 검역소에서는 검체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세균확인 동정을 위해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필요시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 (다) 검사 의뢰를 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에 검사 결과 통보

## 나) 승객 및 승무원

- (1) 대상
  - (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설사 등의 증상 표시를 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 (나) 설사 등의 증상을 신고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 (다) 37.5℃ 이상의 발열자 중 필요한 경우
- (라)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써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검체 채취 및 방법

- (가) 붙임 제4호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여부 확인 후 검체채취 및 검역조사 실시
  - \* 설사증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붙임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조사표 (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 추가 작성
- (나) 설사 증상자: 직장도말 또는 채변
  - \* 단 직장도말은 검역관이 설사증상자에게 검체 채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설사증상자가 직접 채취하게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채취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검역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이 채취 할 수 있다.
- (다) 37.5°C 이상 발열자 등 : 인후(상기도)도말 또는 객담, 필요시 채혈, 채뇨

#### (3) 검사 실시

- (가) 세균검사 대상 검체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사 대상 검체는 냉장(또는 실온) 보관 후 유증상자 조사표 및 붙임 제35호서식의 따른 검체의뢰서와 함께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 (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를 실시하고 의뢰한 검역소에 그 결과를 붙임 제17호서식에 따른 검역유증상자 검사확인서를 통해 통보

## (4) 검사항목 등

- (가) 세균 검사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 (나) 바이러스 검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검역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포함 가능)
  - \* 바이러스 검사는 입국자의 방문국가 등을 고려하여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의 종류를 선택 후 실시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절기 동안 해당 오염지역 입국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강화

3)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 가) 검역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국내로 시체를 반입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제7호서식에 따른 유해검역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2) 방부처리 증빙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 사본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서류
    - (가) 붙임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 (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다) 사망자의 신원확인 관련 서류
    - \* '(1)'~'(2)'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서류 제출,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원본을 확인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 가능
    - \* 유해(시체)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시용 목적으로 플라스티네이션(Plastination) 처리과정을 거친 인체(사체)
      - 연구·전시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미라
- 나) 서류심사 결과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붙임 제8호서식에 따른 유해검역확인서 발급
- 다) 서류심사 결과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체를 보관 중인 터미널, 창고 또는 선박 내 별도장소 등에서 현장검역 실시
  - 관의 침투성 여부, 방부처리 유무, 관의 밀봉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붙임 제8호서식에 따른 유해검역확인서 발급
- 라)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불허

- 마) 운송수단의 운행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 제출 서류(운송수단의 장):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
  - (2) 사망자가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검역조치 실시
- 바)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를 검사하기 위해 해부를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승낙이 필요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 (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4) 검역조사의 생략(법 제6조,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 시행규칙 제3조는 2020. 3. 25. 부터 시행
  - 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⑦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전부생략), ⑥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객 또는 승무원이 내리는 경우(일부생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 전부 또는 일부 생략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나) 검역조사 생략 신청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선박의 경우: 입항 24시간 전에) 제출
- 다) 검역조사 생략 절차
  - (1) 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접수·심사 후 즉시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를 신청인 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
  -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붙임 제22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로 통보
  - (2) 일부생략의 경우, 선박이 검역감염병 별 감시기간 이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인근지역 포함)에서 직접 출항한 경우 또는 검역감염병 별 감시기간 이내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하선하는 승객 및 승무원에게 건강상태질문서(오염지역체류·경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라) 검역조사 생략 심사 합격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인 경우
  - (1) 검역조사를 생략한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도착지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
  - (2) 다음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관련 사실 통보
- 마) 검역조사 생략 심사 불합격 운송수단은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한 관할 검역소에서 승선검역을 실시
- 바) 군용운송수단 중 법 제7조에 따라 검역조사를 생략한 경우 검역을 완료한 것으로 봄

## 마.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 1) 범죄의 예방·수사나 피의자 체포 업무로 검역조사 대상과 접촉한 운송수단의 검역 조사(법 제6조)
  - 가)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과 접촉이 있은 때에는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 실시
    - ※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검역 전 승선·탑승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나) '가)'의 운송수단이 그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목적지 인근의 검역소장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파견하여 당해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 2) 군용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법 제7조)

군용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검역조사 생략 가능

- 가)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다는 사실
- 나)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 3) 피난 항공기의 검역조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 가) 항공기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는 항공기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에 따라 보고
  - 나)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
- 4) 피난 선박의 검역조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 가) 선박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는 선박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에 따라 보고

- \* 나포,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음
- 나)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선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
- 5) 불법조업 선박의 검역조사(법 제6조, 제9조,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 가) 검역대상:불법조업 선박(나포선박) 및 접촉선박
  - 나) 검역시각: 입항 즉시
    - \*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 등에서 입항 통보 즉시
  - 다) 조사장소 :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 또는 불법조업 선박 정박지(불개항정박지 포함) 등
    - ※ 발생상황, 안전상의 문제,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실시

## 03 수 검역조치(법 제15조)

## 가.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 1) 식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조사
  - 가)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소독, 폐기 및 이동금지 조치
  - 나) 선박에 적재된 물건 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세관장에게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해 줄 것을 요구
  - 다) 식품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보관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정명령
  - 라)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개선명령

## 2) 전자 검역 대상 선박 보건위생관리

- 가) 전자 검역을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감염병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중 일부에 대해 검역조사에 준한 보건위생관리 점검 실시
  - (1) 보건위생관리 대상 선박 선정 세부기준

구분	보건위생관리 대상 선박 선정 세부기준	비고(배점)
필수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경유한 선박 으로서 검역 감염병 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
	감염병 발생 동향 등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 과)에서 검역 강화를 지시한 사항과 관련된 선박	질병관리본부 배점 및 제외기준 수립
별도	여객선(여객선, 화객선, 카페리 포함)	검역소 자체 배점 및
선정	크루즈	제외기준 수립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검역소 자체 배점 및 제외기준 수립
(1)	최근 6개월 이내 소독명령을 받은 선박으로서 승선검역 또는 보건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선박	400
	최근 1년 마지막 검사결과, 1군 감염병 검출	400
	최근 1년 동안 국내 미 입항 선박	30
2	마지막 검사결과가 1군 감염병 외 병원균 양성이면서, 최근 1년간 감염병균 5회 이상 검출 선박	100
	마지막 검사결과가 1군 감염병 외 병원균 양성이면서, 최근 1년간 감염병균 4회 검출 선박	95
	마지막 검사결과가 1군 감염병 외 병원균 양성이면서, 최근 1년간 감염병균 3회 검출 선박	90
	마지막 검사결과가 1군 감염병 외 병원균 양성이면서, 최근 1년간 감염병균 2회 검출 선박	85
	마지막 검사결과가 1군 감염병 외 병원균 양성이면서, 최근 1년간 감염병균 1회 검출 선박	80
(3)	최근 1년 마지막 검사결과가 음성인 선박	0
<u> </u>	고철, 어패류, 목재, 곡류, 사료 적재 선박	40
4	증명서 유효기간이 2주 미만 남은 선박	30

(2) 보건위생관리 대상 선박 선정 제외기준 (가) 외항 입항 선박 (나) 평일 주간 근무시간(일출부터 일몰까지) 내 불가능한 경우

\* 하절기(5월~9월): 08:00~19:00, 동절기(1월~4월, 10월~12월): 09:00~18:00

- (다) 접안 후 단시간(3시간) 내 출항하는 경우
- (라)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검역 또는 보건위생관리 이력 있는 선박
  - \* 단, 선정기준 중 '필수선정'이나 구분 ①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기준 아님
- (마)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등 위생검사 신청 선박
- (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기상악화, 인력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 (3) 검역소 자체 배점 및 제외기준 보건위생관리 대상 선박 선정 세부기준(공통)의'별도선정' 항목 중 '여객선', '크루즈',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각 국립검역소 별로 자체 배점 및 제외기준 수립
- 나)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 실시 및 항해 일지·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등 서류 확인
  -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경유한 선박으로서 검역감염병 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 다) 위생관리 점검 결과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번식이 확인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위생상태 개선명령 또는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명령을 실시(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동 금지 등 적절한 검역조치 수행)
- 3) 운송수단에서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 가)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 (1) 발생보고: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세균분석과)에 즉시 보고
      - \* 콜레라균(O1 또는 O139)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 고위험 병원체 분리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위험병원체)
    - (2) 조치사항
      - (가) 입국자 전원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즉시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 확인
        -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나)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

- (다)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붙임 제27호 서식의 검역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병원균 검출결과 통보
- (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을 한 후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 \*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결과 통보 전 또는 운송수단이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출항한 경우: ①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검역소에 통보하여 차항지에서 소독 할 수 있도록 소독명령서를 이관하여 소독이행을 한 후 소독결과 보고서 확인 ② 차항지가 국외일 경우 해운대리점을 통해 소독이 필요한 선박임을 통보하고 검역정보 시스템 내 선박이력 확인가능토록 정보 관리 후 차후 해당 선박이 국내 입항 시 보건위생관리 가능토록 수행(이 경우 오염지역 또는 비오염지역으로부터 입항 여부 관계없이 보건위생관리 수행)
- 나)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
  -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세균분석과)에 즉시 보고. 다만,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 발생보고는 제외

## (2) 조치사항

- (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 입력
- (나)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붙임 제27호 서식의 검역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병원균 검출결과 통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법 등 지도
  - \* 지도방법: 자체소독 실시 권장 및 조치 결과 회신 요청(비협조 시, 차기 입항 시보건위생관리 강화)
- 다) 검역조사(전자 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 포함) 결과 선박 내 감염병원균이 검출된 해당 선박이 외국으로 출항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입항한 경우, 검역소장은 검역 장소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소독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할 수 있음
- 4) 소독 조치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가) 소독 명령

(1) 감염병 매개체<sup>\*</sup>의 서식 및 번식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모기류, 설치류, 벼룩, 모래파리, 바퀴벌레, 흡혈벌레, 집파리

※ 근거: Vector Surveillance and control at ports, airports, and ground crossings (WHO, 2016)

- (2)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역일정, 출항일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 발급
- (3) '(2)'의 명령 사실을 서면으로 그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음

## 나) 소독이행

'가)' 항의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라 소독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소독약품

- (1) 사용약품제제는 환경부 등의 승인을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 준수
  - ※ 소독약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 소독결과 확인 시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 (나) 소독약품의 환경부 등의 승인 유무 및 약품사용기준 확인은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rk)'에서 확인 가능
    - \* 참고4의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예시 참조

## 라)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 (1)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실시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 제출. 다만, 항공기 및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 \* 검역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붙임 제23호 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 \* 다만,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3)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에 해당 사실 통보
- (4)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 자는 소독 완료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 결과 보고서 제출
- (5) 검역소장은 소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 마)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 (1)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 (3) 운송수단 및 수출·입 회물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 보유
  - \* 검역소장은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운송수단 입항 대수 및 소독건수(건/년) 등)과 관련 법령(「검역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HCN·MB 등)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붙임 제23호 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약제(HCN·MB 등)의 보유기준을 소독대행업체(자)에게 통보

## 바)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1) 수입폐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또는 매개 우려가 있어 소독을 필요로 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쥐잡이소독(HCN 훈증소독) 또는 분무소독(살충 또는 살균소독) 실시

- (2) 수입고철화물
  - (가) 수입고철 중 각종 병원체나 감염병 매개체 등의 유입이 우려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 실시
  - (나) '(가)'의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① 수입고철소독기준 및 소독방법 등의 적정이행 여부

② 각종 병원체나 감염병 매개체 등의 유입이 우려되는 수입고철 소독의 경우, 선박 내 또는 부두(하역장, 야적장 포함)에서의 소독처리 실시여부

- ③ 동 화물의 작업장 주변에 대한 위생적인 청결상태를 유지여부
  - \* 고철소독을 이행한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처리이행 사항

#### (다) 고철수입자 및 소독업무대행자 준수사항

- ①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 시 야적장으로 이송 후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 실시
- ② 고철하역장 및 고철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 금지 조치
- ③ 고철수입자가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 시 계약내용에 고철 소독과 흙 및 쓰레기소독을 구분계약토록 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
  - \* 수입고철을 하역장에서 야적장으로 이송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처리이행 사항
- ④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여부 확인
- ⑤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붙임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고철 소독계획서 및 붙임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고철소독 결과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 에게 제출
- ⑥ 고철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 시 문제점이 도출 되어 지도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라) 수입고철 소독기준

살충소독기준

원제 1L당 살포기준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1,000톤 기준)
약품명	원제량	살포량	살포면적	살포면적
살충제	1 Q	40cc/m²	2,500 m²	16,500 m²

- ⑦ 고철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고철의 적재방법에 따라 하역 장소 및 야적장 등의 면적기준을 관할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 ④ 하역장소 및 야적장 면적이 소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독면적에 대한 기준을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 ④ 수입 컨테이너화물(고철) 소독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소독 기준 및 소독방법에 따름
- ② 고철톤수(량)에 대한 살포면적(m²) 산출기준
  - ② 고철소독면적은 500톤(3,000㎡)단위로 산출하되, 500톤 단위기준 이하 또는 이상의 잔여 톤수에 대한 고철소독 면적산출은 250톤을 기준으로 절상·절하하여 500톤 단위로 살포면적을 산출
  - (P) 고철 하역 시 소독면적: 1,000톤당 6,000㎡
  - © 고철야적장 이송 후 하역장소(부두) 소독면적 :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3,000㎡
  - ② 고철야적장 이송 후 야적장 및 그 주변 소독면적 :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7,500㎡
  - ⊕ 1,000톤 미만의 고철소독의 경우 1,000톤을 기준으로 소독실시예시)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m²)	원제량(≬)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9.0
10,000	70,500 (60,000+3,000+7,500)	28.2
30,000	190,500 (180,000+3,000+7,500)	76.2

- 5) 이동금지 등의 조치(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 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 조치
  - 나) 운송수단의 이동금지 통보 방법 운송수단의 장 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 발급
  - 다) 오염 운송수단과 그 주변 통제 통제기간, 통제사유 등이 표시된 붙임 제6호서식에 따른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 하여 검역관 등 관계자 이외 타인의 접근 통제

- 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운송수단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함
- 마)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 해제 및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 통보
  - (1) 검역감염병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 사항을 이행한 경우
- 6) 회항 등의 지시(법 제15조, 제23조, 시행규칙 제18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회항·이동 지시서를 발급하여 회항 또는 다른 검역구역으로의 이동 지시 가능

- 해당 검역소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이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나. 승무원·승객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제17조)

- 1)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 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대한 조치
    - (1)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및 검역감염병별 대응 지침에 따름
    - (2)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 발생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나)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 (1)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및 검역감염병별 대응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여 조치
    - (2)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 발생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2)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가) 집단설사(2인 이상)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1) 발생보고: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즉시 보고
  - (2) 조치사항
    - 설사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한 검역조사 실시 후,「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의심 환자 여부 및 증상의 경중에 따라 조치
      - \* 설사증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붙임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설사증상자 조사표 (2인 이상) 추가 작성
    - 설사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 검체채취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에 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나) 설사 증상자(1인)가 발생한 경우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직장 도말 또는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보

#### 3)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 가)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A형 간염 제외)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 (1) 발생보고: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세균분석과)에 즉시 보고
    - \* 콜레라균(O1 또는 O139)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 고위험 병원체 분리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위험병원체)

#### (2) 조치사항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1인)의 경우는 개별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A형 간염 제외) :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 검사결과, 탑승했던 승객·승무원 중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소독 결과 보고서 확인
- \* 기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역 정보 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 할 수 있음
- 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검역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포함 가능)이 검출된 경우
  -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 바이러스 분석과)에 즉시 보고

#### (2) 조치사항

- 즉시 환자에 대한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 등 격리시설로 입원조치 및 관할 시·도에 동 사실을 통보(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즉시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 \* 검역소장은 검체채취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에 문서로 통보

- 4)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 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관찰시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3) 자가
  - 나)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많이 발생하여 격리관찰시설이나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격리관찰실을 설치·운영
    - (1) 검역소 내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 참고5의 임시격리실 설치·운영 기준 참조
    -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 (3)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4) 간이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다)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격리조치 또는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 요청
  - 라)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격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발급
  - 마)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의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음

- 바)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 소장에게 제출
- 사) 접촉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
- 아) 발생보고: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즉시 보고
- 5)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에 대한 감시
  - 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
  - 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
  - 다)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 및 격리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 콜레라: 5일
    - (2) 페스트: 6일
    - (3) 황 열:6일
    -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 10일
    -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 (7) 신종인플루엔자 : 최대 잠복기

- (8) '(1)' 내지 '(7)'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 \* 최대잠복기 : 폴리오 및 에볼라바이러스병(21일)
- 라)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즉시 보고
- 마)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명단 통보기준 검역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입국자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자동 통보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명단 통보기준〉

구 분	명단 통보 기준	비고	
<ul> <li>승무원·승객에서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균(A형간염 제외)이 발견(확인) 된 경우</li> </ul>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2인 이상)의 일원일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1인)의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단 2인 미만의 설시증싱자 발생은 추적조사대상은	
• 운송수단 내에서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이 발견(확인)된 경우	• 입국자 전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아니며 입국 후 증상발현 등 설사 증상자 관리를 위한 사실 통보	
• 승무원·승객에서 2인 이상의 집단 설사 증상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유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 승무원·승객으로서 개별 설사 증상자 중 검체채취(직장도말 또는 채변)한 경우	• 개별 검체채취(직장도말 또는 채변)한 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6) 질병관리본부장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 검역소장은 출국,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대상자가 발생하면 요청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검역지원과)에 즉시 보고

※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등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와 협의 후 조치

#### 다. 검역증 발급

1) 검역증(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검역증을 발급(단,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검역증의 발급 생략 가능)

2) 조건부 검역증(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명기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건부 검역증 발급

- 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발급
- 나)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역 소장은 이동 금지 등의 조치

#### 【 조건부 검역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 기타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사환자의 재설문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 04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보고

- 1) 주요 감염병(메르스, 에볼라 등)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조치
  - 가) 보고내용 : 주요 감염병(메르스, 에볼라 등)오염지역 입국자(제3국 경유 입국자 포함) 검역조치 현황
  - 나) 보고방법 : 붙임 제31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매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보고
- 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조치
  - 가) 유행절기 동안 오염지역 입국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강화 및 검역조치 현황 보고
  - 나) 보고방법 : 붙임 제32호서식 및 붙임 제32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보고
- 3) 해외(신종)감염병 지속 발생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경우
  - 가) 보고내용 : 해외(신종)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 나) 보고방법 : 붙임 제33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정해진 보고일시 내 질병 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보고
- 4)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조치
  - 가) 보고내용 : 행사 참가자 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 나) 보고방법 : 붙임 제34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정해진 보고일시 내 질병 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보고
- 5) '1)' ~ '4)'의 세부사항 및 시행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메모보고 또는 공문 요청에 따름

# 제3장

# 감염병 예방업무

- 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
- 3. 교육 및 훈련

# 제3장 감염병 예방업무

## 01 수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법 제29조)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또는 검역감염병 이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 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

- 1) 조사 시기: 검역구역 내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신고 포함
- 2) 조사방법
  - 가) 검체 채취
  - 나)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
- 3) 조치 및 보고사항: '검역조사결과 조치 및 보고사항'에 준하여 실시

#### 나.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1)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선정
  - 가) 검역소장은 방역사업 개시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관할 보건소장 및 공항만 시설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이 어려운 공·항만(부두)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소독을 실시
  - 나) 방역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참고
- 2) 소독기간: 4~10월(주 1회 이상)
  - \* 다만, 검역소장은 지역별 기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 소독방법: 살균 및 살충소독

#### 4) 실시요령

- 가) 취약지역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 대상지역에 초미립자 (ULV) 소독을 실시
- 나)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 조치
- 다) 검역구역 내 소독을 보건소, 항만(공항)공사, 항만(공항)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업무대행자 등이 실시할 경우 소독실시 현황 등에 대해 월 1회 확인
  - \* 단. 소독실시 주체에 따라 확인 주기 및 방법 등 조정 가능
  - \*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 관계기관(자)의 소독실시 현황 지도 및 점검 가능(붙임 제15호 서식에 따른 검역구역 내 방역 소독 지도·점검표 참조)

#### 5) 방역약품·약제 선정 및 사용

-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살균·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해충에 맞는 살균·살충제 사용
- 나) 약제별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의 희석·배합을 배제함으로써 살충효과를 높이며, 구제대상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해 성분별 순환교대식으로 사용
- 다) 방역약품의 선정 시 환경호르몬추정물질의 함유여부를 검토하여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 다. 감염병 보균자 검사

- 1) 질병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보건소 주관 시 정보공유
  - 가) 대상기관 :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 대리점, 관련 여행사, 병원, 약국, 식품 접객업소 등
  - 나) 모니터링 기간
    - (1) 평시 : 월 1회 이상
    - (2) 비상방역 기간(5~9월): 주 1회 이상
  - 다) 신고대상
    - (1)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 (2) 급성열성질환 증상자(37.5℃ 이상 발열자)
    - (3) 급성설사(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 라) 선정방법
    - (1) 검역소장은 환자 또는 유증상자의 신고 등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
    - (2)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제

#### 마) 운영방법

- (1)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모니터링제의 운영취지·환자발생에 따른 신고요령, 비상 연락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 (대상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 (2) 검역소장은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감염병 발생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필요 시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 (3) 해당 기관 방문 또는 유선 등 대상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신고요령 숙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4) 필요 시 연1회 이상 모니터링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 바) 모니터링 결과 조치 및 결과보고
  - '검역조치 보고사항'에 준하여 실시
- 사)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신고 시 업무절차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신고 접수
  - 질병관리본부에(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보고
    - 설사환자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증상자(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 MERS, AI 유증상자(검역지원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검역관/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
  - 검체 채취 및 보건교육
  -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 안내
  -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병원균 검출 결과 보고
    - 설사환자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균 검출 시(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 MERS, AI 검출 시(검역지원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 검역조치 보고사항에 준하여 보고
  - 해당 시·도(시군구)에 명단 및 검사결과 통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역학조사
  - 환자/접촉자 관리
  - 감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 치료/격리

48

#### 라. 어패류와 식품취급자 위생지도 및 관련 교육·홍보

1) 기간 : 연중(분기 1회 이상)

2) 대상 업소: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3) 내용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 마.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1)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

가) 조사기간: 3.1 ~ 11.30

- 나) 조사내용
  - (1) 모기종별 분포 및 밀도 조사
  - (2) 플라비바이러스 감염 조사
- 다) 조사방법
  - (1) 모기채집: 유문등, BG 트랩 등 모기채집기를 이용하여 채집
  - (2) 검사항목: 지카·일본뇌염·웨스트나일열·뎅기열·황열 바이러스
- 라) 사업기관
  - (1) 사업총괄: 국립부산검역소
  - (2) 수행기관: 국립검역소 13개소
    - ※ 2020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사업 계획 참조
- 마) 플라비바이러스 양성균 검출 시
  - (1)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매개체분석과에 결과 보고 및 해당 검역소에 검사결과 통보
  - (2) 해당 모기 채집 검역소는 관할 시·군·구에 검사결과 통보 및 업무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방역 소독 강화 요청
- 바) 기타사항
  - 감염병 매개체 채집정보는 월 1회 검역지원과, 매개체분석과 통보

#### 2) 바퀴 및 쥐 서식 여부 조사

- 가) 바퀴벌레
  - (가) 조사기간: 4. 1. ~ 11. 30.
  - (나) 조사방법
    - Pit-fall trap 및 끈끈이 트랩으로 월 1회 바퀴벌레 채집
    - 미분류 건은 매개체분석과로 송부하여 결과 회신
  - (다) 조사지점
    -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역

#### 나) 쥐

- (가) 조사기간 : 필요시
- (나) 조사방법
  - 생포용 쥐덫을 활용하여 쥐를 채집
  - 혈액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혈액 채취 후 병원체(페스트 등) 검사
- (다) 조사 지점
  -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
  -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역
- (라) 검사수행
  -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부산·여수 검역소)
    - 병원체(페스트 등) 자체 검사
    -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결과 통보
  - 검역소
    - 지역거점 검사센터로 병원체(페스트 등) 검사 의뢰(혈액채취 후, 즉시 냉장택배로 의뢰)

#### 〈검역소별 검체 의뢰 지역거점 검사센터〉

지역거점 검사센터 검 역 소

인천공항 검체의뢰↑ **⇒** 결과통보

- 인천검역소
- 동해검역소 ○ 제주검역소\*

부산

검체의뢰↑ **⇒** 결과통보

- 김해검역소
  - 울산검역소 ○ 포항검역소
- 마산검역소
- 통영검역소

검체의뢰↑ **⇒**결과통보 ○목포검역소 ○ 군산검역소

여수

\* 플라비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제주검역소 자체검사 실시

#### 3) 매개체 방제

- 가)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관할 보건소 등에 매개체 채집정보를 월1회 제공
  - \* 해당 매개체를 채집한 검역소는 관할 보건소 및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 등에 검사 결과 통보 및 업무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방역소독 강화 요청
- 나)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반영
- 4) 검역소장은 검역소별 특수성을 감안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
  - \* 단, 모기종별 분포・밀도 조사 및 플라비바이러스 감염 조시에 관한 사항은 부산검역소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매개체분석과) 보고 실시

#### 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 1) 조사대상

- 가) 승선검역 대상 선박 중, 콜레라 오염지역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환·주입하고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 \*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 제외
-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 중 관할 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평형수 콜레라균 검사를 의뢰한 선박

- 2) 조사방법: 선박평형수 세균검사 실시
  - 가)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이 승선검역 대상일 경우 원활한 시료채취를 위해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 및 해운대리점 직원 협조 요청
  - 나) 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의 선박평형수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 수행
- 3) 검사항목 : 콜레라균(O1 또는 O139)
- 4) 검사결과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조치사항
  - 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총괄과, 세균분석과) 보고 및 관할 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통보
    - \*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보고
  - 나) 선장 또는 선사·해운대리점 등에 즉시 병원균 검출결과 통보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수행
  - 가) 기간
    - (1) 감시사업 지점: 1~12월(월2회, 격주)
    - (2) 보건위생관리 지점: 1~12월(월2회, 격주)※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계획 참조
  - 나) 조사 대상
    - (1) 병원체 : 콜레라(O1 또는 O139),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 (2) 환경인자: 기온, 수온, 염도, 탁도, pH
  - 다) 검사기관
    - (1) 사업총괄: 국립여수검역소
    - (2) 수행기관: 항만검역소 11개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
  - 라)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출 시 통보 및 균주 송부: 참고7

(1) 통보대상: 콜레라(O1 또는 O139) 및 비브리오패혈증균

(2) 통보내용: 채취일자, 감시지점, 검체종류, 병원체명, 수온

- 2) 관내 보건기관과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예방
  - 가) 지역별 감염병 발생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 나) 유사 시 공동방역대책 협의
  - 다)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 평가
  - 라)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조
  - 마) 관계기관 업무체계 구축 등

#### 3)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 가) WHO, CDC 등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 나)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를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 등에 제공하여 해당 지역 여행·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다)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 (병원체 확인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 라) 검역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축제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 4)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 가) 검역소장은 해외여행객에게 해외발생 감염병 정보제공 등을 위해 검역구역 안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의 역할
  - (1)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 제공
  - (2) 국가별 주요 감염병 현황 및 개인위생수칙 제공

- (3) 해외여행건강관련 정보 등 제공
- (4) 해외여행질병관련 홍보, 상담 및 교육 등
- (5)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6) 해외여행객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증진관련 프로그램 운영

## 0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법 제28조)

가. 대상: 황열, 콜레라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외국으로 나가는 시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 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 1)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2) 예방접종증명서 작성 방법
  - 가) 증명서 발급번호 기입
    - 증명서 발급번호 체계: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 번호 5자리
      -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NMC), 충남대학교병원(CNU), 분당서울대학교 병원(SNU), 국립울산검역소(USQ), 국립부산검역소(PSQ) 등
      - 예시) NMC1700001('17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명서 번호)
  - 나) 이름: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
  - 다) 날짜: 일(숫자), 월(영어의 약어), 년(숫자)로 작성
  - 라) 서명: 여권과 동일한 신청인 자필 서명
  - 마) 담당 의료인의 직급과 서명 : 예방접종 담당 의료인의 이름을 영문 자필로 기입

#### 바) 유효일

- (1) 황 열(주사제): 예방접종일자 10일 이후부터 평생 (예) 2017.10.10. 접종한 경우, 20.OCT.2017 ~ life of person vaccinated
- (2) 콜레라(경구제)
  - (가)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기초투여: 최소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투여
      - 기초투여 1차 : 투여일의 일주일 이후부터 5주간 유효
      - (예) '17.10.10.에 1차 투여한 경우 '17.10.17.~ '17.11.20. 유효
      - 기초투여 2차 : 투여일부터 2년간 유효
      - (예) '17.10.17.에 2차 투여한 경우 '17.10.17.~ '19.10.16. 유효
    - 추가투여 : 기초투여 후 2년 이내 1회 추가투여 시 투여일부터 2년간 유효
      - •매 2년마다 추가투여 가능
      - (예) '17.10.17에 추가투여한 경우 '17.10.17.~'19.10.16. 유효
  - (나) 2~5세 이하 소아
    - 기초투여: 최소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투여(투여 간격이 6주가 경과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간격)
    - 추가투여: 지속적인 면역을 위해서는 기초투여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투여
    - \* 이외 투약 및 의약품 관련 정보는 의약품 설명서 참조

#### 3) 예방접종 관련 주의사항

- 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피접종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의 예방접종 여부와 질병(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 등) 유무를 확인하고 붙임 제11호서식(황열) 또는 붙임 제12호서식(콜레라)의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를 작성·제출
- 나) 9개월 미만의 영아(황열), 2세 미만의 소아(콜레라)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의사 소견서(영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붙임 제13호서식의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발급
  -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발급 시에는 뒷면의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
  -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에 부착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다) 접종자는 예방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 등 의약품 설명서를 숙지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과 이상 반응에 대하여 설명
- 라) 국제공인 예방접<del>종증</del>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백신 개봉 등 예방접종 준비 조치

#### 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 1) 대상
  - 가)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나)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다)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 라) 예방접종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증명서 재발급 요청 시
- 2) 발급기관
  - 가) 검역소
  - 나)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해당 지정기관에서 접종한 경우)
- 3) 접수 및 처리 절차: 재발급 신청(접수) → 발급내역 확인 → 증명서 재발급

  \* (검역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내역을 확인 후 발급 가능
- 4) 제출 및 제시서류
  - 가) 제출서류
    -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붙임 제14호서식) 1부
    - (2)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의 경우 제외)
    - (3)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위임장(대리인 발급 시)
    - (5) 신분증(대리 발급 시)

- 나) 제시서류
  - 여권 또는 여권사본(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5) 재발급 수수료: 1,000원(수입인지)

#### 마. 증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 날인

#### 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 별지 제34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준영구 보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민원사무처리부로 대체 가능

#### 사.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등(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

- 1)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따름
  -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수입인지)
    - \* 기 발급된 증명서에 추가 투약사항을 기재할 시 수수료 면제
    -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를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에 부착하여 발급하는 경우 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만 부과
  -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백신료와 접종비용
    - (1) 백신료는 실비로 하며 질병관리본부가 구매하여 배분한 백신을 사용한 경우, 수입인지로 징수한다.
      - 질병관리본부 백신 구매 실비
        - · (콜레라) 39,000원, (황 열) 31,560원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백신의 경우, 각 기관에서 구매한 비용으로 징수(현금, 카드 등)
        - ※ 황열 예방접종 단가인상: 2019. 5. 1.

\* 백신료 단가가 변경될 경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서 검역소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 변경 금액을 문서로 통보

- (2) 접종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무료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유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및「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예방접종 시행비용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 가)「해외이주법」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입양특례법」제19조에 따른 양자
- 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 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 아, 의약품 관리 및 보관

- 1) 백신 수령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확인
- 2) 백신은 자동온도측정기록장치와 냉장고 이상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백신전용 냉장고에서 2~8℃를 유지·보관
- 3) 백신의 유효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폐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 가) 발생확인일로부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장(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경우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조번호, 폐기 처리 예정일자 등을 서면보고
  - 나)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소는 분기별로 관내 폐기처분한 백신의 결과를 취합하여, 붙임 제16호서식 예방백신 폐기 보고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 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4조)

#### 1) 자격 및 신청

-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내과 전문의 상주,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구비 가능한 의료기관
- 나) '가)'의 자격을 갖춘 기관의 장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담당의사 이력서<sup>\*</sup>를 첨부하여 질병관리 본부(검역지원과)에 신청
  - \* 내과전문의 여부 및 의료기관 내 상주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함
  - \*\* 예방접종 담당의사 변경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 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검역소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

#### 2) 백신 수급관리

- 가) 백신 수령 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확인하고 백신전용냉장고(2∽8℃)에 보관
- 나) 백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참조
- 다) 백신의 유효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폐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검역소장에게 발생확인일로부터 지체 없이 서면보고
  - \* 유효기한 경과로 폐기한 백신은 폐기 당시 백신료로 환산하여 국가에 지불
- 라) 붙임 제30호서식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 서면보고

#### 3) 기타 이행사항

가) 예방접종 접수 시 신청인에게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인지 첨부)를 받고, 신청인에게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수신자 부담 택배 또는 검역소 방문 직접 수령 등)을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 간 붙임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 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관할 검역소 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국제 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 날인하여 현장 발급 가능

- 나) 당일 접수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는 관할 검역소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으로 팩스 송부하고, 원본은 월단위로 관할 검역소에 제출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협약이 체결된 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월단위로 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원본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
- 다) 관할 검역소 지도·감독 사항
  - (1) 관할 검역소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서식 소요량을 파악하여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서식을 송부하여 반기별로 증명서 발급 및 폐기 등과 기타사항에 대해 붙임 제10호서식에 따라 지도· 점검 실시
- ※ 질병관리본부장이 잦은 백신폐기 등의 사유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도·감독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검역소는 요청에 따라 실시
  - (2) 주요 점검사항

증명서 발급 관리	통계관리	<ul><li>월별 증명서 발급현황</li><li>접종자 내역</li><li>통계일치 여부</li></ul>
	증명서 수불 대장 관리	• 증명서 수불대장 적정 작성 여부
	증명서 발급 신청서 관리	• 발급신청서 적정 관리 여부 • 수입인지적정관리 여부
증명서 폐기 관리	폐기증명서 적정관리여부	• 폐기증명서 수량확인
백신냉장고 관리	온도기록관리	• 온도기록 데이터 확인 • 보관장비 관리대장

- (3) 관할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새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1년간 매월 1회 백신보관상태 및 접종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 라)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4) 업무흐름도

관할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지정기관으로 송부

Ú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민원인 방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별지 제31호서식
-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작성
  - 붙임 제11호서식 또는 붙임 제12호서식

Û

○ 수입인지 구입(발급신청서에 인지 첨부)

Ţ

○의사 진료

Û

○ 예방접종

 $\hat{\mathbb{T}}$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및 자체 증명서 발급대장 등 작성

Ţ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월단위로 국제공인예방접종발급신청서 및 접종자 현황, 접종자 내역(엑셀형태)를 관할 검역소로 송부

Û

○ 관할검역소는 증명서 발급·폐기 등 관리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도 감독 예방접종면제자

Д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 제13호서식 발급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작성·발급

#### 가. 검역감염병 예방 안내 및 교육(법 제29조의6)

- 1) 검역소장은 시설관리자 및 운송인에게 법 제29조의6에서 정한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
- 2) 시설관리자 및 운송인이 '1)'의 내용을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안내 또는 교육하고 있는지 점검
- 3) '1) ~ 2)'의 결과를 매 반기마다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보고

#### 나. 검역관 교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1) 검역관: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검역관련 전문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검역실무기본과정'
- 2) 검역관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 :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기본 교육(검역법, 검역업무지침, 개인보호장비 및 검역현장 실습 등 포함)\*을 이수해야 함
  - \*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기본교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검역실무기본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다. 훈련

- 1)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현장훈련 및 토의(도상)훈련 실시
- 2) 훈련 계획 및 결과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보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중 검역감염병 훈련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전한국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제4장

# 행정사항

- 1. 증명서 발급 및 서식 관리업무
- 2. 벌칙 조항
- 3. 기타 사항

# 제4장 행정사항

## 01 🖣 증명서 발급 및 서식 관리 업무

#### 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1조)

- 1)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이 도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에 선박위생 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신청
  - \* 제출서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 2) 해당 선박에 대해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 및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 등 선박위생관리 검사 실시
  - \*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및 참고2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에 따라 검사 실시

#### 3)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 가) '2)'의 검사결과에 따라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 (1)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는 경우: 소독대행업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 (2) 검사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 나)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독명령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2)'의 검사 후 합격 시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 다)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위생검사 수수료를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
- 라) 재발급 신청 및 발급은 '대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발급'에 따름
- 4)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5)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 실시
- 6)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작성방법
  - 가) 증명서 발급번호 기입
  - 예시) 국립부산검역소(PSQ1900001), 국립울산검역소(USQ1900001), 국립포항 검역소(PHQ1900001) 등

####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절차〉

• 선장, 선박의 소유자, 해운대리점이 별지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에 따라 제출(선박이 도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신청)

접 수

- 접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민원처리 기간은 2일(1일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간계산)

위생검사

• 검역소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참고 2번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

발급 🕏

 $\Rightarrow$ 

• 위생검사 점검 결과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

기타사항 · 선박 위생검사 실시 결과 및 증명서 발급 결과를 붙임 제9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기록부 및 민원처리부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부 및 「검역업무지침」 붙임 제9호서식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 기록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증명서 발급관리> 및 <민원증명서 신청관리>로 대신할 수 있음

#### 나. 그 밖의 증명서(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 1) 신청 및 수수료
  - 가) 운송수단의 장이나 또는 그 소유자가 검역조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 나) 검역조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은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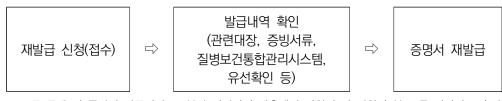
#### 2) 증명서 발급

- 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
- 나)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을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소독증명서 발급
- 다)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세균학적 검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세균학적 검사 증명서 발급
- 라)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균· 혈청학적 검사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역 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발급
- 마) 소독증명서: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소독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 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독증명서 발급
- 바)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 검역조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붙임 제17호서식에 따른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발급

사)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소독업무 대행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함

#### 다.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발급

- 1) 재발급 대상
  - 가)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나)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 다) 운송수단의 이름, 국적,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접수·처리 절차



- \* Fax를 통해 기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제출했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 관련서류 수신
- 3) 처리기간 : 즉시
- 4) 구비서류
  - 가) 붙임 제18호서식 검역관련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1부
  - 나)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 및 국내항에서 발급받아 질병정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5) 재발급 수수료: 1,000원(시행규칙 제29조)
- 6) 재발급 증명서 기재요령
  - 가) 일시(연월일) 등:기 발급 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 나) 발급 기관 관련 기재 및 증인란: 재발급 검역소 기재 및 증인

라. 건강상태 질문서의 보존기간 등

1) 제출 대상 및 방법:참고6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참조

2) 보존기간 : 1개월

#### 마. 검역조사서의 작성·보관(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1)부터 7)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 검역관은 검역조사서(붙임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 다만, 이는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만 해당
-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 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 \*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 02 🖣 벌칙 조항

####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 1)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 수단의 장
-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다. 양벌규정(법 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라.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3조)

#### 1) 일반기준

- 가) 검역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
  -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검역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200만원
나.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라.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5호	200만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700만원
아.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 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700만원
자. 운송인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200만원

#### 3) 참고사항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함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마.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절차(법 제29의3, 제41조)

부과 절차*	세부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6조)	- 오염지역 방문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 제공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제17조)	-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전자문서 가능)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참고)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	- 신고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다만, 재판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정정부과 가능
이의제기 (제20조)	<ul> <li>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li> <li>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li> </ul>
법원에의 통보 (제21조)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sup>\*</sup> 과태료 부과 절차 별 관련「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조항: 부과 절차 구분 하단의 '( )' 참조

## 03 기타 사항

#### 가. 사업계획

- 1) 검역소장은 검역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도별, 계절별 운송수단의 도착·출발 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제출
- 2) 사업목표량은 인력, 보유장비, 기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량으로 설정
- 3) 사업수행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나. 검역차량의 관리 및 운용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 지침」에 따름

\* 검역지원과-1453(2017.6.27.)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 지침」제정 안내

#### 다. 증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 1)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 날인
- 2)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 날인

#### 라. 검역대 사양

검역소장은 검역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역대 사양을 참고하여 설치

#### 마. 전자 검역심사대

- 1) 해외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입국자 검역 및 응급상황(의심환자 발생 등)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IT 기술 적용 검역시스템
- 2) 대상: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상황 초래 가능 감염병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검역감염병(예: 메르스 등)

#### 3) 검역단계

- 가) 의심환자 발생 및 이송 조치
- 나) 전자 검역심사대에 저장된 입국자 좌석번호를 활용한 밀접접촉자 명단 생성
- 다) 행자부 연계 거주지정보 실시간 수집
- 라) 거주지 관할 보건소 통보
- 마) 밀접접촉자 대상 SMS전송 및 의료기관 DUR 연계

#### 4) 서비스 개념도

참고8의 전자 검역심사대 서비스 개념도 참조

# 제5장

## 붙임

[붙임1] 허가필

[붙임2] 검역 전 승선. 탑승 허가 발급대장

[붙임3]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붙임4]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

[붙임4의2]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

[붙임5]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접근금지 표지판

[붙임7] 유해검역신청서

[붙임8] 유해검역확인서

[붙임9]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급기록부

[붙임10]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도 점검표

[붙임11]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ㆍ제공 동의서

[붙임12]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ㆍ제공 동의서

[붙임13]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1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붙임15]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붙임18] 검역관련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붙임16] 예방백신 폐기 보고서(O분기)

[붙임17]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붙임19]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붙임20] 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붙임21] 검역대 사양

[붙임22]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통보서

[붙임23]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

[붙임2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붙임25]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위임장

[붙임26] 전자 검역 심사결과 통보서

[붙임27] 검역조사 결과통보서

[붙임28] 검역조사서

[붙임29]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신고대장

[붙임30] 국제공인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

[붙임31] 메르스 오염지역발 제3국 경유 입국자 및 검역조치 현황

[붙임3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현황 조사표

[붙임32의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즘 관련 호흡기 유상상자

진단감시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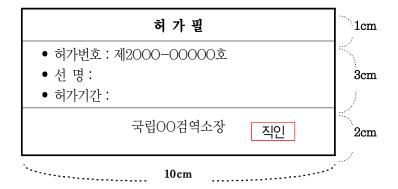
[붙임33] 검역 일일 상황 보고

[붙임34] 국제행사 관련 오염지역 입국자검역 현황

[붙임35] 검체의뢰서

붙 임

#### [붙임 제1호서식]



#### [붙임 제2호서식]

##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 대장

허가	허가	운송	ИП	생년		담당	허가	허가		결 재		шТ
번호	일자	수단명	성명	월일	소속	업무	목적	기간	담당	과장	소장	비고

붙 임

[붙임 제3호서식]

##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 선 명(Name of Vessel):

□ 승객 및 승무원의 수(Number of Passengers and Crew):

선내 모든 승객, 승무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환자 발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passengers and crew are health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re are also no unusual signs of illness on board.

□ 환자 발생시 작성해주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there is any patient present on board.)

성 명(Name)	나 이(Age)	추정병명(Impression)

\* 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발생 인원 및 추정병명만 기록하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several people have the same symptoms.)

발생인원(Number of Patients)	추정병명(Impression)	

<sup>\*</sup> 환자 발생 시에는 환자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세요.

(Please distribute the health questionnaire when there are any patients present on board.)

년 월 일(yyyy mm dd):

선의 서명(Ship's Medical Doctor):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O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붙임 제4호서식]

## 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

조사자	소속:			Г						조사일	l 년	월	일
	성명:			연락	락처:								
1. 기초:	조사												
ol	름	칙	이름			국적			(2	민등록 1국인 등 1권번호	<b>록</b> 번호,		
생년월		Ļ	<u>.</u>	월		일		성별			□남		겨
주 연 전화I	소						직업	섭(직징	명)				
체이메일	[구조												
* 기초조	사의 인	적사형	당은 '건강	상태질	문서	'의 인	적사형	항으로	갈음	할 수 있	있음		
2. 여행	력												
최근 21일	국 기	<u>'</u> ት	도 시				류기				경유	Н	고
동안의				년	월	일 .		<u>년</u>	월	일			
여행력				년	월	일		<u>년</u>	월	일			
(경유국				년 년	월 월		~ ~	<u>년</u> 년	월 월	일 일			
포함)				- 년 년	<u></u> 월		~	<u>-</u> 년	<u></u> 월	일			
	낭양상	_					- •						
최초 증상	발생일	_	ե	<u> </u>	월		_일	죄조	발생	증상			
OLD H.C	. A.H		예(약물명	명:		)		현지	의로	리관	예	ο.	\
약물복용	5 여구		아니오					빊	낭문여	부	(방문사		)
		ㅂ	열(37.5	°C OLZ	\ <del>-</del> }\				] 예	( °C)	□ 아니의 □ 아니		
		기		Cols	<i>5)</i>				] 예	( 0)	□ 아니		
		구.							 ] 예		□ 아니		
		가	래						] 예		□ 아니		
증성	라		가쁨						] 예		□ 아니	•	
(현재 또	는 최근		한 및 근	. –					] 예		□ 아니		
21일동안		•	통 or 설	c	ነደለት		나사드		] 예   싸ㅁ	드물	□ 아니		l 쉄버
확인		설	사인 경		3장 기간	_ =	<sup>=</sup> 열^ <b>일</b>				□ 점액성 <b>바하루설시</b>		혈변 <b>회</b> )
		결	막출혈 (			1			] 예		○ 아니		<i>y</i>
		소:	화기출혈						] 예		□ 아니		
		탈					,		] 예		□ 아니	1오	
		ᅵ기	타 ( :	소화기	증성	5)	( =	뇨기 중	증상	등 )	(		)

붙 임

4. 위험요인										
	발병 감시기간 이내에 각종 동물(박쥐,	낙타, 가금류 등)과	□예 □아니오	□ - 모름						
동물 접촉력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접촉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 —							
	접쪽안 공물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접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						
	발병 감시기간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염병 확진자		□예 □아니오							
환자 접촉력	감염병 의심 또는 추정환자		□예 □아니오	□먊						
	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또는 바이러스출혈열 등 감염병증성 또는 사망한 자	ያ으로 지됴맏은 사	L에 L아니오							
	동행 여행객		П	명						
	동일 객실 이용자(선박 해당)			명						
-1	선실 방문자 및 접촉자 명단(가능한	특정하여 작성)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내 *방문 장소(가능한 시간과 : * 화장실 등	상소 특성하여 작성)								
	^ 시 ㅇ ㄹ ㅇ									
기타사항	섭취음식									
5 건연고	· 의견사항									
V. 645	<del> </del>									
6. 증상확인	인 동의서									
□ 확진 시까?	지 격리 및 대기여부	□ 예	□아니	오						
□ 증상확인을	을 위한 검체(체액 등) 채취 여부	□예	□아니⊆	고 오						
□ 개인정보 :	처리 및 제공 동의 여부	□예	□아니9	오						
	증상자 :			인						
※ 개인정보 7	세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del></del> 활용되지 않으며, 제	 공된 개인정보의	—— 의 이용을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검역법」제15조제1항 및 제39조에 의거,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제4의2호서식]

##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

조사자 성명:	조사일자 : 20		
, , , , , , , , , , , , , , , , , , , ,	, – ,		

#### 1. 단체현황

입국일시				편명/선명			Ž	출발지	
여행기간				여행사명 (단체명)				드/담당자 연락처	
		일 자		(2 110)	97				
어웨이되									
여행일정									
	E	탑승인원(명	)	717111511	= 71		딘	체여행객(명)	
탑승자 현 황	계	승무원	승객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통과 여객	총인원	<u> </u>	증상	채변

#### 2. 증상자현황

성명	증 설사기간	상 설사횟수	설사양상	증상 발현일	증상발현 전 섭취음식	섭취 장소	약복용 및 병원 방문여부 (진단명)
	설사·구토·복	└───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	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3. 조치사형	3.	조치	시	-힝
---------	----	----	---	----

	설사증상자	채벼검사 실	시 후	. 귀가	~ 지		병원	아내		병원	후송
_	- 100	. 11 1 2 11 1 1		11/ 1		_	() 1 '	1 1 11	_	() 1 '	1 ()

□ 기타

-침 고

[붙임 제5호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앞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이용 목적
  - 검역조사 관련 서류징구, 검역실적 통계작성, 역학조사 및 유증상자 사후관리,증명서 신청 및 발급, 검체 채취,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검역조사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업실적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
-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 ○○검역소의 검역업무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u>개인정보의 제공</u>

- □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화일(DB) 이용 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 등의 검역업무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 본인은 검역조사 대상자로서 검역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 면)

#### □ 개인정보 처리·제공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공중보건조치),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 검역조사 등 국립검역소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〇〇검역소장 귀하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참 고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앞 면)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l> <li>Purpose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li> <li>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to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obtain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tc.</li> <li>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li> <li>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and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li> <li>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li> <li>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li> </ul>				
☐ I agree with the processing of my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5, 23 and 24.  ☐ Agree ☐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Country, Local Government, Medical Institutions □ Purpose of Information Use  - Associated quarantine, such as work of quarantine measures, preventive measures, etc.				
<ul> <li>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passport number), and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records)</li> <li>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li> <li>The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recordkeeping associated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li> </ul>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s 17, 23 and 24, in order to perform required quarantine work.  ☐ Agree ☐ Disagree				

(뒷 면)

<ul> <li>□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li> <li>−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7), —Restriction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Article 24)</li> <li>− The Quarantine Act: Quarantine Inspection (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 (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other than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Article 20), Shipment into and Inspection of deceased, etc. (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 (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 (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Sanitation in Quarantine Areas (Article 29)</li> </ul>
** Concerning the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consent to OO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providing and manag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Signature)
Director of the O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o not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the provider agreement. If you do not want to consent to the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can request correction or deletion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from a legal representative.

## 제1장

기검 본역 방업 침무

## 제2징

검역업무

제3장

예감 방염 업병 무

붙 임

## <u>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2인 이상)</u>

(앞 면)

<u>개인정보 수집·이용</u>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이용 목적							
- 검역조사 관련 서류징구, 검역실적 통계작성	성, 역학조사 및 유	증상자 사후관리, 증명서 신청					
및 발급, 검체 채취,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을	을 위한 목적으로 /	· 용					
- 검역조사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업실적:	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	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3조 및 R	III IMAC IOZNOR	그 그리					
	M24소의 #경에 띄	다 독립이어심역소의 심역입구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영영 : 영영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u>성명 :</u> 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u>개인정보</u>	<u>의 제공</u>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화일(DB) 이용 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 등의 검역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	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 검역조사 대상자로서 검역조사 업무의							
l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등의함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성명 :	동의함 등의함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등의함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뒷 면)

#### □ 개인정보 처리·제공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공중보건조치),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 검역조사 등 국립검역소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국립〇〇검역소장 귀하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제1장 ---기검

기검 본역 방업 침무

제2정 ----

무

세3성 ---예감

데4장

# The agreement to provid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ver 2 peo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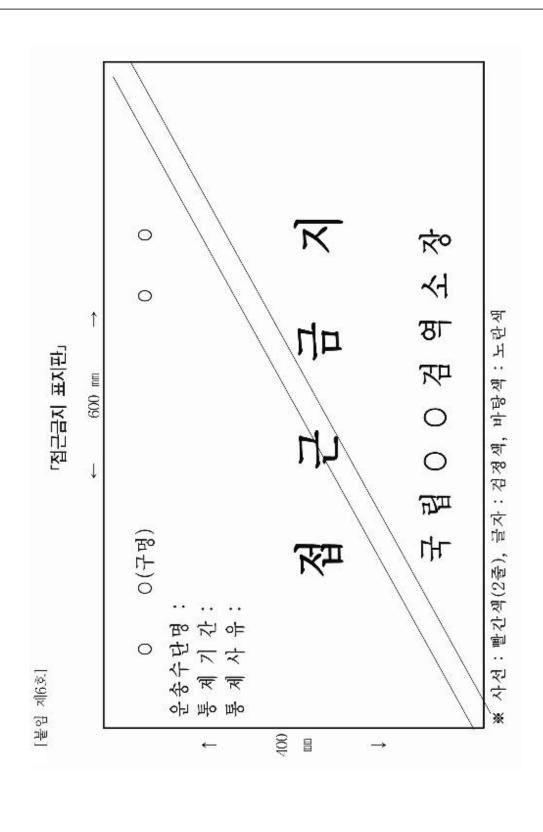
(앞 면)

The collection and use o	f personal infor	<u>rmation</u>				
<ul> <li>□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li> <li>−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li> <li>□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li> <li>−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li> <li>□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li> <li>−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li> </ul>						
□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c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Name: Name: Name: Name:	□ Agree □ Agree □ Agree □ Agree	<ul><li>□ Disagree</li><li>□ Disagree</li><li>□ Disagree</li><li>□ Disagree</li></ul>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quarantine work smoothly.  Name:  Name:  Name:  Name:		-				

(뒷 면)

<ul> <li>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li> <li>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li> <li>The Quarantine Act: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li> </ul>
**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Name: (Signature)
<ul> <li>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li> <li>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required a consent</li> </ul>

of legal representative.



#### [붙임 제7호서식]

## 유해검역신청서

운	송 수 단 명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ւլըել	사망일시	
사망자	사망원인	
	사망지역	
	고나이조근	□ 알루미늄관 □ 석관 □ 유리관 □ 나무관
	관의종류	□ 기타( )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전화번호	
	관 계	

「검역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검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국립〇〇검역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2. 방부처리증명서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3. 항화물운송장(AWB) 사본 또는 선하증권(B/L) 사본
- 4.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사망자의 신원확인 서류 제출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유해검역확인서

No.
-----

운 송 수 단 명				
	성 명		성별	
사망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유,무)		
유무		※ 검역감염병 명		
	1. 관의 침투성 여부	( 침투성, 불침투성 )		
보존상태	2. 방부처리유무	(유,무)		
	3. 관의 밀봉상태			

「검역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검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검역관 (서명 또는 인)

국립이이검역소장

세 I 선 ----기검 본역

제2장

검역업무

제3장

예감 방염 업병 무

세4성

----행

제5장

| | | | |

제6장

참 고 今次

분임 제9호]

## 咒 か 7QU do do 점검 결과 (관리,면제) 위생관리 20 元 기록부 관련 의견 및 조치 加 위생관리 점검 상황 의생 관리 상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패의 사식 유무 과의 발견 및 존격여부 等 如 회사/ 따리잠명 参客令 水水 선학명 事事を 요기 설레 오피 安 市 는 다 다 다

268mm×190mmdlstho 8 시(2급) 60g/II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점검표

2000. 00. 00.

점검자	국립00검역소	직급(위)	이름	(인)
수검자		직급(위)	이름	(인)

	점검 내용	예	아니오	비고
1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필수조건			
1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2	기 지정된 내과전문의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3	백신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4	백신 전용 냉장고에 온도 기록 기능이 있습니까?			
5	황열 예방접종 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18년 1월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2	증명서 발급 및 폐기 관리			
1	접종자 내역, 월별 증명서 발급 현황이 검역소에 보고된 통계와 일치합니까?			
2	증명서 수불대장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3	발급신청서 및 정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수입인지 징수금액 및 소인처리 여부			
4	폐기증명서 수량이 정확합니까? - 증명서 잔여량과 증명서 수불대장과의 일치여부			
3 (	계방접종 보고사항			
1	국립검역소에 아래의 보고를 이행하였습니까? (익월 5일 전까지) - 월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현황 - 정부수입인지 - 면제증명서 발급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			
2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④ 증인 관리					
1	증인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지정 등)					
2	증인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5	백신 관리					
1	백신을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관리 중입니까?					
2	백신 전용 냉장고의 온도 기록 데이터가 적정온도(2~8℃) 범주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3	백신 전용 냉장고에 대한 온도 기록 데이터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4	백신 수급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5	백신 수급관리 대장과 실제 백신 사용량 및 잔량이 일치합니까?					
6	질병관리본부에 아래의 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까? - 유효기한 도래 백신 잔량 보고 - 백신 폐기사유 발생 시 보고 - 백신 수불현황 분기별 보고 - 백신 월별 사용현황 관리					
7	보유 중인 백신의 유효기한이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8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 하였습니까?					
〈기타 사항〉						
〈현장 총평〉						

붙 임

[붙임 제11호서식]

##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앞 면)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별	□남 □여

확 인 사 항	F	답 변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예	□ 아니오
(   약이나 음식물(계란, 닭고기, 젤라틴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 아니오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 메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ㅁ예	□ 아니오
주십시오.(예방접종명 : ) 최근 1개월 이내에 경련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 아니오
지는 가게철 어디에 당신을 골드신 당담이 있습니까: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		□ 이디포
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ㅁ예	□ 아니오
(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예	□ 아니오
(병명 : )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여성)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계획이 있습니까?	ㅁ예	□ 아니오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답 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실시하는 예방	_ ~ ~	
접종업무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_ ~	_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예	□ 아니오
	ㅁ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ㅁ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ul><li>예</li></ul>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ul><li>예</li></ul>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ul><li>의</li><li>의</li><li>의</li></ul>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제공받는 기관: 관련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제공받는 기관: 관련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상단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과 동일	_ 예	□ 아니오

<sup>※</sup>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 면)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① 9개월 미만의 영아
  - ※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본인의 동의하에 예방접종
- ② 임산부, 수유부
- ③ 계란, 닭고기, 젤라틴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
- ④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 ⑤ 흉선 질병(Thymus disease)의 병력이 있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예: 후천성면역결핍증)
  - ※ HIV감염자들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황열예방백신 접종가능
- ⑥ 과거 황열예방접종을 받은 후 심각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을 나타낸 사람
- ⑦ 희귀한 유전성 과당불내성 환자

#### 접종 후 주의사항

- ① 14일 이내 헌혈 금지
- ② 3일 정도 금주
- ③ 3일 정도 사우나, 통목욕 삼가(샤워는 가능)
- ④ 3~14일 후에 미열과 경한 두통, 몸살(근육통), 주사부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이상반응(심하고 지속적인 구토나 발진, 이상감각, 악성 두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산증, 근육 혹은 간 세포융해, 림프구 및 혈소판 감소, 신부전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다발성장기부전(사망까지 가능)과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대한 신경계통 부작용(수막뇌염, 길랭-바레증후군, 급성산재성뇌척수염 등)이 일어날 수 있음 (\*접종 후 약 1달 이후에도 발생가능). 이상반응 등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접종자(의료인) 기록란					
체온:	℃	점검결과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하였음				□예 □아니오	
'이상반응 관	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	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함	□예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٨)	여명 또는	인)

국립 ○ ○ 검역소

## Yellow fever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 and Privacy Consent Form

Name

Date of birth

(front)

Phone number (Home)	(Mobile)	Sex	□Male		e □ Female			
Question					Answer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your symp	otom(s).			Yes		No	
Have you ever had any allerg medication, eating food (include					Yes		No	
Have you ever had any ad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ne in the past?	If yes,		Yes		No	
Have you been vaccinated in (	the past month? If yes, please	e specify the vacci	nation(s).		Yes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had any cramps?				Yes		No	
Have you ever been diagno lung disorder, heart disease, a blood disorder? If yes, pl	liver disease, diabetes or a	n endocrine disor			Yes		No	
Do you have cancer, leuker please describe the disease(s		ogical disorders?	If yes,		Yes		No	
In the past three months, ha radiation treatment?	ave you received any steroi	ds, anti-cancer dr	ugs, or		Yes		No	
In the past year, have you rece	ived any blood transfusions or	immunoglobulin ti	herapy?		Yes		No	
(For women only) Are you the next month?	currently pregnant or plan	ning to get preg	nant in		Yes		No	
Consent to the handle	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Aı	nswer		
I hereby provide consent to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 pursuant to Articles 15 and 2 Purposes of the collection	ination conducted by the Na 3 of the Personal Informatic and use of personal informa i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ive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Illection and use tional Quarantine on Protection Act: ation: Sharing info after vaccination phone number (home	Station		Yes		No	
I hereby agree that the Na information according to A Protection Act for the follow Purposes of providing person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ult Institutions to be provided.	Articles 17 and 23 of the wing: nal information: Sharing infor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and with personal information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 the period of their retentions sonal information.	may share my pe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rt.  The property of the personal interpretation and use: Same a	rmation ealthcare ealthcare s above		Yes		No	
about potential adverse effect Vaccinee (legal representativ Relationship with the vaccin	ets. re/guardian) name:	(	(Signatur	re)				
W W - have the sight to one	::	Month_		Day	,	<u>`</u>	Year .	

<sup>\*\*</sup> You have the right to provide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If you do not provide consent, however, it may limit your ability to receive a vaccination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thereof.

(Back)

#### Persons who cannot be vaccinated

- ① Infants less than 9 months old
  - \*\* Those 60 years or older must give their voluntary consent due to the small chanc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 2 Pregnant women and breastfeeding mothers
- 3 Persons hypersensitive to eggs, chicken, and gelatine
- 4 Persons with a severe fever (those whose body temperature is  $38^{\circ}$ C or above)
- ⑤ Persons who have a history of thymus disease, or persons with congenital or acquired immune malfunction (e.g.,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 \*\* Persons infected with HIV may be vaccinated for yellow fever if they do not show AIDS, or there is an instruction by the physician.
- Persons who have had any serious allergic reaction (anaphylaxis) to yellow fever vaccination
- 7 Patients with hereditary fructose intolerance

#### Things to note post-vaccination

- ① No blood donations are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 ② No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 3 Neither the sauna nor a full bath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But showers are permitted.)
- ④ Some may have a slight fever, headache, fatigue (muscle pain), or pain at the injection site for 3 to 14 days following the vaccination. In rare cases, some may experience an adverse effect (severe and continued vomiting or rash; skin tingling or numbness; severe headache; shortness of breath; cramps; coma; increased acidity in the blood; disintegration of muscle or liver cells; decreased lymphocytes and platelets; or renal failure). Even if it is rare,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life-threatening) and allergic reactions may occur, as may serious side effects in the nervous system (meningoencephalitis; Guillain-Barre Syndrome; or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It may occur even one month after vaccination).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the vaccination authorities.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form				
Body temperature: °C Notable findings upon check-up: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about things to follow post-vaccination and any possible adverse effects.	□ Yes □ No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that he or she should "stay for 20 to 30 minutes at the vaccination institution to observe any adverse effects." $\Box$ Yes $\Box$ No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name:	(Signature)			

O 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붙 임

[붙임 제12호서식]

명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이용기간과 동일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적어주십시오(

성

#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생년월일

(앞 면)

□ 예

피접종자와의 관계:

년 월

□ 아니오

l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별	ㅁ남		<b>□</b> 여
	확 인 사 항	답 변			
	오늘 아픈 곳(특히 위, 장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픈 (	등 증상을 적이	서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닭고기, 젤라틴 포함) 혹은 백신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h? 있다면 O	ll방접종명을 `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입원사유를

예방접종 사전예진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ľ	답 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실시하는 예방 접종업무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폰)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b>બ</b>	□ 아니오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제공받는 기관: 관련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상단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및 보유·	ㅁ 예	□ 아니오

(서명)

<sup>※</sup>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 면)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①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 ② 최근 다른 약을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중이면 접종 전 상담 ※ 임산부, 수유부는 접종이 가능하나 의사 및 약사와 상담
- ③ 급성위장관질환이나 급성열성질환이 있는 경우
- ④ 경구콜레라 예방백신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 경우

#### 접종후 주의사항

- ①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 ② 접종 1시간 전과 접종 후 1시간이내에는 음식 및 음료, 다른 의약품 섭취 금지
- ③ 3일 정도 금주
- ④ 가끔 위장 관계증상(복통, 위경련, 설사)이 있을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고열, 전신적인 불편감,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콧물, 기침, 현기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반응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 콜레라 예방접종 참고사항

- ①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기초접종 2회,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2년 이내 재접종
- ② 2~5세 소아: 기초접종 3회, 각각의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6개월 이내 재접종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접종자 기록란)					
체온: ℃	점검결과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하였음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명함	접종 후 20~30 <del> </del>	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힘	ł' 을 설	□예 □아니오	
접종자(의 <u>:</u>	료인) 성당	명 :	(서명 또는	= 인)	

# 국립 〇 〇 검역소

# Cholera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 and Privacy Consent Form

Name

Date of birth

(front)

Phone number (Home) (Mobile)	Sex	⊔ Mal	e	_ Female
Question			A	nswer
Are you sick today (particularly stomach or gastroin yes, please describe your symptom(s).	ntestinal discon	nfort) If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llergic reactions such as hive taking medication, eating food (including eggs, chiese being vaccinated?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cken, and gela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dverse reaction to any vacci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s).	ne in the past	? If yes,	□ Yes	□ No
Have you been hospitalized in the past month? If yes, plea	ase specify the i	reason(s).	□ Yes	□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n	A	nswe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 I hereby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 of co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conducted by the Nat pursuant to Articles 15 and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  Purposes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 between healthcare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Sensitive information items: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in (home/mobile) Retention and use period: Follows the period defined under	llection and use tional Quarantin n Protection Ac- tion: Sharing in after vaccination formation), phon	e Station t: formation	□ Yes	□ No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r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s 17 and 23 of the Protection Act for the following:  Purpose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informini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Institutions to b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institution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the period of their retention i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ay share my e Personal Info nation between h n: Applicable h tion	nealthcare	□ Yes	□ No
I hereby agree to receiving this vaccination aft informed about potential adverse effects.	er I have be	en pre-c	hecked	and fully
Vaccinee (legal representative/guardian) name: Relationship with the vaccinee:		(Signatur	e)	
-				Year
* You have the right to provide no consent to the han	dling of person	al inform	ation for	vaccination.

(Back)

#### Persons who cannot be vaccinated

- ① Persons with a severe fever (those whose body temperature is  $38^{\circ}$ C or above)
- 2 Consultation is required before vaccination if you have taken another medication or are currently on medication.
  - \* While pregnant women and breastfeeding mothers may be vaccinated, consultation with the physician or pharmacist is required.
- (3) Persons with an acute gastrointestinal disorder or a fever
- 4 Persons allergic to oral cholera vaccination

#### Things to note post-vaccination

- ① No blood donations are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 ② No food, beverage, or other medication is allowed for 1 hour before and after vaccination.
- ③ No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 ④ Some may experience gastrointestinal symptoms (stomach pain, stomach cramps, or diarrhea). In extremely rare cases, some may experience severe fever, systemic discomfort, nausea, vomiting, loss of appetite, a runny nose, cough, or dizziness.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 Things to note for cholera vaccination

- ① Young children ages 6 or older and adults: Basic vaccination 2 times, at an interval of 1 to 6 weeks. Then, make sure to get re-vaccinated again within 2 years for continued protection.
- ② Young children ages 2 to 5: Basic vaccination 3 times, at the interval of 1 to 6 weeks. Then, make sure to get re-vaccinated again within 6 months for continued protection.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form			
Body temperature: °C Notable findings upon check-up: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about things to follow post-vaccination and any possible adverse effects.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that he or she should "stay for 20 to 30 minutes at the vaccination institution to observe any adverse effects." $\square$ Yes $\square$ No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name: (Signature)			

O 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앞면)

	ITRAINDICATION TO VACCINATION L접종에 대한 의학적 금기사항
성 명 Full Name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서 명 Signature	국 적 Nationality 인
This is to certify that immunization	
이 문서는 ( )에 대한 예방 증명한다.	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기된다는 것을
	for is medically
(Name of Disease-질병명)	(Name of Traveler-여행자 성명)
Exempt because of the follow	ing conditions:
(Date:dd/mm/yyyy)	(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
(발급일:일/월/년)	(담당의료인의 서명)

11×7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m²)

(뒷면)

# INFORMATION FOR VACCINATION EXEMPTION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

- O Reasons other than medical contraindications are not acceptable for exemption from vaccination(의학적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예방접종 면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What is mentioned below can be applied to travelers who hold this paper in their country of destination.(본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목적지 (도착지) 국가에서 다음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uarantine may be required for a few days at the destination.
     (도착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Entry into the country which requires a yellow fever or cholera vaccination certificate may be refused.(황열 또는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Vaccination may be required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목적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11 \times 7$ 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9/m^2$ )

붙 임

# [붙임 제14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 <mark>종증</mark> 명서 재발급 신청서							
국립 () ()	검역소장 귀히	ił	접수	·번호			
Director of t	he OO Nat	tional Quarantine Station	증명시	너번호			
l request r	eissuance o	발급받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당 f the International Certifica 28 of the Quarantine Act.				issued in	n
성 명	국 문 Kor.		성 Se				
Full Name	영 문 Eng.		국 Natior	.			
주민등록 Date of Birt			전 Te				
주 : Present A				·			
전 발급 Former Issu			Former	· 연월일 Issuing ate			
재발급 신 Reason for <i>i</i>				받은 백신 No.			
연월일(Date):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Applicant or Representative): (인)(Signature)							
수미 서르		은 증명서(분실의 경우 제외) 5명 서류 1부(인적사항이 변경된 비인 발급 시)	경우)	Stamp	Revenue		
				210	)mm×297mm(일	발용지 70g	₃/ m²)

\*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 기재 및 본국 ID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함께 기재

붙 임

#### [붙임 제15호서식]

#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 1. 관리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2. 주요 점검사항

구분	당	점 검 결 과		<u></u>
十七	항 목	0	Х	비고
가	방역소독 계획수립			
나	결과 보고 여부			
다	방역소독 실적 달성여부 (실적/계획)			
라	방역소독 결과 확인			

#### (건의사항)

### 3. 방역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독업신고번호		
소재지 / 연락처		

# 4. 방역 관련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인적사항		확인서 류
자격	■ 소독업신고증, 및 관련 자격증	성명:		
교 육	■ 소독대행업자(종사자)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보수교육 : 1회 이상/3년			
	ich D	점		
	항 목	양호 불량		비고
상 비	▼ 소독에 필요한 장비       - 분무소독기 : ( )대			
	- 그 외 살충 · 살균소독에 필요한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야프 미 나이내여/시프이야프아저권 친기야프)	품 및 사용내역(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약품) 명 호 불 량		
OF	작품 및 사용대학(작품의학품원인자 여기학품)			비고
약 품	■ 약 품 명:1. 2.			
	■ 1회 희석량 : 1. 2.			
	■ 총 사용량 : 1. 2.			

위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u></u>	2 2	
확인자(관리자):	(인)	확인자(방역자):	(인)
지도 • 정건자	(/	(01)	(0

# [붙임 제16호서식]

국립00검역소

백신 폐기 보고서(0분기)

뺊	
副刀쳐是从异	
別	
<u>폐기</u> 수량	
유호 기한	
사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는 된 전 현	
제조 회사명	
당	
B0 방다	

#### [붙임 제17호서식]

#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성 명	국 적	
신청인	생 년 월 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에 대한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검체)

(병명)

다음과 같습니다.

# ■ 검사결과

검사방법	결과	판정 연월일	기타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			
혈청학적검사			
기타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임 제18호서식]

# 검역관련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수입인지 뒷면 붙임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 뒷면 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ſ	「검역법」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 )증명서의 재발급 신청합니다.					
	I request a reissuance of the ( ) certificate tha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 전 발급 검	역소명(Former Is	ssuing Office): 국립	검역소		
	□ 전 발급 연	월일(Former Issu	uing Date): 년	월 일(yyyy/mm/dd)		
	□ 재발급 신청	성사유 및 내용(Re	eason for Application)			
	=	구 분	변 경 전(Before)	변 경 후(After)		
재발급 신청 사유 (Reason)						
	_	박 명 of Vessel)				
		국 적 iionality)				
	_	록번호 gistration No)				
	신청	! 년 월 일(Date)	: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또는 대리인 (Applicant or Representative): (인) (Signature)					
l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	너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제19호서식]

# <u>수입고철소독계획서</u>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수입고철소독계획서

# 1.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선박총톤수	
고철수입국명	고철적재량(M/T)	
고철하역일시 (하역기간)	수입자	

# 2. 소독실시계획

구 분	수 입 고 철
소 <del>독종</del> 류	
소독물량(M/T)	
사용약품명	
사용 약제량(≬)	
소독일시(기간)	
소독인원	
소독장소	
소독장비	

고철수입업체 감 독 관: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인)

#### [붙임 제20호서식]

# 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 1. 적재선박명 :
- 2. 수입국명 :
- 3. 수입자명:
- 4. 소독내용
- 가. 소독물량
  - 고철량(M/T) :
    - 하역장(야적장) 면적(m²) :
- 나. 사용약품명 :
- 다. 사용약제량
  - 원제량(ℓ):
  - 희석된 약제량(ℓ):
  - 희석비율 :
- 라. 소독일시(기간):
- 마. 소독인원(명): 명. 끝.

고철수입업체 감 독 관: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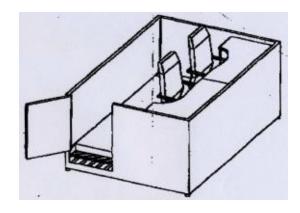
[붙임 제21호서식]

# 검역대 사양

구 분	규 격 (가로×세로×높이, cm)	형 상	재 질	비고
고정식	300×200×135 (바닥높이 30)	별도1	목재	○ 위치 : 입·출국장 입구
이동식	200×100×103	별도2	"	○ 위치 : 각 게이트

※ 검역대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1개조로 구성하며, 규격 및 출입문 위치는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도 1] 고정식



[별도 2] 이동식



#### [붙임 제22호서식]

#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

- 수신자 :
- 도착(입항)예정 일시 :
- 운송수단명 :
- 생략 사유 :
- ○「검역법」제6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검 역조사 생략 신청서 건의 심사결과 (적합/부적합)을 통보합니다.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합격한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일 경우, 다음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반드시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 . . .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 임

[붙임 제23호서식]

#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

#### 1. 소독업 신고 내역

상 호	소독업 신고번호	
대 표 자	소독업 신고일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2. 주요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인적	사항	확인서류
자 격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1인)	성명: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교 야	■ 소독대행업자(종사자)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 - 보수교육 : 1회 이상/3년	이수자:		교육이수증
	항 목		점검결과	
	0 7	양호	불 량	비고
시 설	■ 사무실과 유독물 보관장소 별도 구획			
	■ 유독물 보관장소의 안전성 확보 - 환기시설/온도·습도계/방재장비 유무/잠금설비			
	항 목	점 검 결 과		
	50 	양 호	불 량	비고
장	■ 소독에 필요한 장비			
H O	– 가스측정기 :( )대 이상			
	- 가스방독면(정화통 포함) : ( )개 이상			
	- 기타 운송수단·화물소독(살충·살균소독 포함)에 필 요한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기 타	— 약품진량 기준(공항검역소는 제외) (HCN : ( )kg, MB : ( )kg, 기타약품(  ): (   )kg)	※ 소독실시 대장	당 및 소독약품 수	불 대장 확인
	■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지도(지적) 조치사항			
	■ 환경부에 등록된 약품 사용 여부			

위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소독업무대행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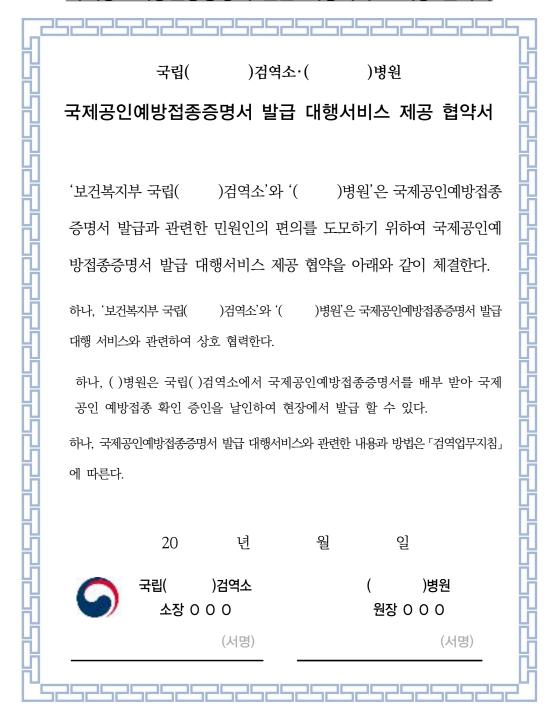
(인)

지도·점검자 :

(인)

#### [붙임 제24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붙임 제25호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위임인 (접종받은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 위임사항: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황열/콜레라) 발급(재발급) 신청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국립 〇 〇 검역소장 귀하

# [붙임 제26호서식]

# 〈전자 검역 심사결과 통보서〉

○ 수신자 :
○ 입항예정 일시 :
○ 운 <del>송</del> 수단명 :
○ 전자 검역 심사 결과 :
○「검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전자 검 역 신청」건의 심사결과 (합격/불합격)을 통보합니다.
- (합격된 선박) 선박의 장은 선박의 도착 즉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승 무원·승객명부,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을 검역소장에게 FAX 등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 (불합격된 선박)「검역법」제12조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은 후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20

국립○○검역소장

[붙임 제27호서식]

# 검역조사 결과통보서

(Notice of Sanitation Results)

□ 수신자(Dear):

□ 일시(Issue Date):

우리 검역소에서 실시한 선박가검물 세균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_\_\_\_\_이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the was detected from the under-mentioned vessel.

해당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선원 및 승객에 대한 감염병 예방홍보와 위생시설에 대한 자체소독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건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hare this notice with your all crew members and keep your facility and all equipment clean and sanitary immediately.

□ 운송수단 소유 회사명(Name of Owner Company):

□ 국제해사가구 고유번호(IMO Number):

□ 선명(Name of Vessel):

□ 선적항(Country of Registry):

□ 검역일시(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 검체(Specimen):

국립○○검역소장

Director of the OO National Quarantine Station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 [붙임 제28호서식]

# 검역조사서 QUARANTINE SURVEY

	<del>-</del>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송수단명 Vessel · Flight · Tra	ain Car No.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Registration			
출발지명 및 일시		승무원의 수(명	)	승객의 수(명)			
Name of departure p	place/Date	Number of cre	•W	Number of passer	ngers		
		[ ]없음 No	[ ]있음 Yes(				
	사망자						
	Existence of Deads	※ 있을 경우 If yes,	사망경위 Details	of an accident:			
	감염병(의심) 환자 Patients	[ ]없음 No	[ ]있음 Yes				
1. 보건·위생 상태 신고 현황 Reported for Health and	of Infectious disease (suspected)	※ 있을 경우 If yes,	[ ]설사 diarrhea [ ]복통 stomacha [ ]발열 fever [ ]기타 (etc.	명 [ ]구토vom ache 명 명 [ ]호흡곤란dys	_		
sanitation	운송수단 내 비상 의약품 Having Emergency Medicine in the convey	[ ]없음 No	0	[ ]%	l음 Yes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성 Content for treating the er			ency care for pat	ents		
o Hlodzki oladkieli	발열감시 결과	[ ]없음 N	0	[ ]있	l음 Yes		
2.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사항 Fever monitoring and requirements for	이상 유무 The result of fever monitoring that is abnormal or not	※ 체온측정자 수	The number of me	easuring temperature	: 명		
questionnaire of quarantine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Requesting the quarantine questionnaire	[ ]증상이 L [ ]증상이 L		owing the symptom : owing the symptom :	명 명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 ]없음 No	[ ]있음 Yes				
	Inhabiting th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 or not	※ 서식(의심)	내용 Suspect infor	mation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 ]양호 Good	l [ ]불량 Bad				
3.운송수단의 위생상태 점검사항	Cleanliness of kitchen and food storage	※ 의심 내용 3	Suspect informatio	n			
The convey	감염병 병원체에	[ ]없음 No		[ ]있음 Yes			
checklist of Sanitary condition	오염(의심)된 적재화물 The onboard cargos exposed to communicable disease agent	※ 오염(의심)	내용 Suspected in	formation			
	기타 위생상태	[ ]양호 Good	l [ ]불량 Bad				
	Other sanitation	※ 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4. 검체 채취	검체번호 The number of Samples	검체! The name of		채취 장소 place of collect	비고 Note		
Collecting the Samples							
Samples							
 5. 검역조사 결과	[ ]이상 없음 Good		 [ ]이상 있음 E	Bad			
The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 이상 시 조치사항 및 사유	The Measures					
검역조사 일시: The date of quar	년 antine inspection Ye 검역관 성명:	월 ear Moni	일 th Day	시 Hour (서명)	분 Minute		
Т	he Quarantine Officer Nan	ne		Signature			
	운송수단장 성명: Master Nam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오염지역 채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

[불임 제29호]

다						
담당 검역관	김철수					
투이사항(증상 등) 및 조치사항	건강상태결문서에 콧물·기원 증세가 있다는 응답에 따라 제온측정,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등 설시					
체류·경유 오염지역 및 해당 기간	○ 미얀마(폴리오) '17.7.28.~8.1(5일)					
관명/ 선박명	KE838					
연락剂	010-1234-5678					
신고자 (국적,생년월일)	홍길동 (한국, 63. 2. 6)					
신고일	17.8.8					

[불임 제30호]

# 국제공인 예방점종 백신 수불현황

(2000 년도 / 0월)

기관명

	4	
五世母母 (3.0)	(D+(D- (B)-(B)	
台	十月	
폐기	2000年	
台台	<b>卡계</b>	
사용	<b>安整③</b>	
총잔량	(00.0±)	
か	<b>卡계</b>	
重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3	の智品	
다	(규격)	
田田	go la	

#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감염병명) 오염지역발 검역조치 현황

	무증상자					
건강상태질문서	유증상자					
건강상	징구율(%)					
	다 나 나					
	국가명					
⊀⊦	국가명					
주요 경유국 입국자 수	국가명					
구요 경우	국가명					
오염지역발	국가명					
	국가명					
	상					
	다 다					

※ 위 서식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1장

기검 본역 방업 침무

제2장

검 역 어

제3장

에감 방염 업병 무

제4자

행 정

제5장

붙 임

데요지

참 고 [붙임 제32호서식]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현황 조사표

(단위: 명, 건, %)

		_					
1	덮						
20 10 10 10	검체채취						
SĀ	기타						
유증상자 검역조치	고						
	귀가 (보건교육)						
\$\$ \$\$ \$\$	以 (10 (10						
입국 시 증상 유 무	10 10 0⊨						
질문서	<u> </u>						
건강상태 질문서	쌝쌺						
제3구 경유	입국자						
-	<u>જ</u>						
오염지역입국자 수	입구자						
어	聚 帆						
i v	- 38%						
3	선 식					X	

※ 위 서식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제32호의2서식]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호흡기 유증상자 진단감시 결과표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검체채취자 수						
성별	남 여						
	10세미						
	10-19세						
	20세-2						
연령	30세-3						
	40세-4						
	50세-59세						
	60세이상						
국적	내국인						
1 1	외국인						
	음성						
	단일병원체(소계)						
	Human ade	novirus					
	Human metapr	neumovirus					
	Rhinovi						
	RSV						
		OC43					
	Human	NL63					
호흡기	Coronavirus	229E					
바이러스 검출 병원체		type I					
[ 현실 6년세 		type II					
	parainfluenza	type III					
		type IV					
		A(H1N1) pdm09					
	Influenza	A(H3N2)					
		В					
	다병원체(소계)						

※ 위 서식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제33호서식]

# ○○[발생국] ○○[감염병명] 검역 일일상황 보고

(국립00검역소, '00.00.00(요일))

# ① ○○(발생국명) 입국자 검역 현황('00.00.00, 00시 기준)

# ○ 입국자 총괄(누적) 현황

	212111511			입국당시 증상		유증상자 조치사항		
입국자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SMS전송	시도 통보	유	무	보건교육 후 귀가	격리병상 이송	

# ○ 일자별 입국자 검역 현황

		건강상태	SMS	시도	입국 증		유증상자 조치사항		
입국 일자	입국자 수	질문서 징구			유	무	보건 교육후 귀가	격리병 상이송	

<sup>\*</sup> SMS 미전송 사유:

# -참 고

# ② 입국자 세부현황(첨부)

연 번	입국 일	편명	성명	성の별	8기점0	증상정보	약 복용	주소 (시도, 시군구)	의심환 자 분류 여부	국적	경유 국
1											
2											
3											
4											
5											
6											
7											
8											
9											
10											
_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위 서식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제34호서식]

# ○○(국제행사명) 관련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 현황(국립○○검역소)

(단위 : 명)

											. 07
일자	참가 국가	계	성	별	건강 <sup>.</sup> 질둔			구당시 남유무	1	유증상지 <i>사항(건수</i>	
		"	남	여	0	×	0	×	검체 채취	보건 교육	시도 통보

※ 위 서식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 임

# [붙임 제3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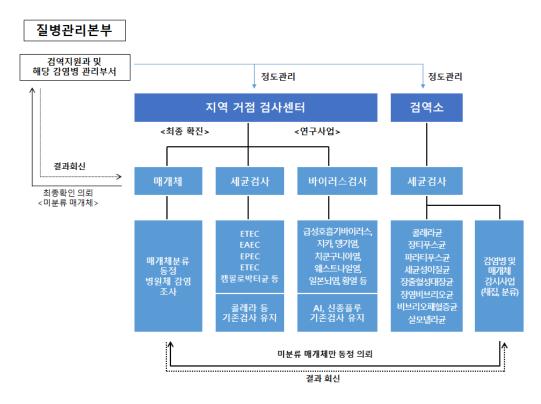
	Ž	심 체	의 로	서				
	① 의뢰기관명				②의뢰자 명	(전화번호)		
	③ 검체의뢰일			1				
의뢰	④ 검체번호							
기관	⑤ 검체 채취일							
	⑥ 검체 채취자							
	⑦ 검체 종류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성별	남 ㅁ	여	
	⑩ 거주지							
	⑪ 운송수단명							
유증상자 정보	12 여행력							
	⑬ 오염지역 방문내역							
	⑭ 주요 증상	* 벼처 ㆍ	ᄋᅎ사ᅚ	· 토하 :	조사·분류표			
		 인플.		<del>5</del> 1 -				
			'ㄷ' 인플루엔	자				
_			기바이러					
	검사항목		호흡기					
		□ 중승	급성호흡 (	출기 승	우순	)		

# 제6장

# 참 고

- [참고 1] 지역거점 검사센터 및 검역소 역할
- [참고 2]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
- [참고 3]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 [참고 4] 소독약품(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 [참고 5] 임시격리실 설치·운영 기준
- [참고 6]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 [참고 7]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출시 통보 및 균주 송부체계도
- [참고 8] 전자검역심사대 서비스 개념도
- [참고 9] 선박 검역 시 소독명령 업무처리 절차

# 지역거점 검사센터 및 검역소 역할



[참고 2]

# 

#### 1. 점검 장소별 점검요령

#### 가. 조리실(Galley)

- 1) 식품조리 시 이용시설의 주기적 청소 및 청소일지 사용 여부
  - \* 천정·바닥·내벽 등의 청결상태
- 2) 식품 안전보관, 준비 및 세정 여부
  - \* 식품 적정 최소온도 및 최대온도 유지
- 3) 최소 1개 이상의 핸드워싱 머신 및 관련시설 설치 유무
  - \* 페이퍼 타월/핸드드라이어. 비누 및 쓰레기통
- 4) 식기·조리기 취급
  - ① 소독시설 유무
  - ② 식기류의 보관상태
  - ③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 \*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증기의 열탕을 말한다. 식기류의 보관 장소는 문짝이나 망문이 없어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조리실 식당등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 5) 적절한 조명 및 충분한 환기시설 등 가동 유무
  - ① 방서・방출시설 구비
  - ② 배수구 차단성
  - ③ 문·창문·환기구의 밀폐성
- 6) 조리실 및 조리원의 위생개념
  - 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착용 및 청결상태 유지
  - ② 손·손톱 등의 청결상태 유지
  - ③ 예방접종증명서 및 소지여부

나. 식료품저장실(Pantry) / 창고(Stores)

- 1) 위생적 보관 및 관리
  - ① 보관품은 바닥・벽과 일정간격 유지
  - ② 청소 및 소독실시
- 2) 적정 보관 및 관리
  - ① 식품의 청결도(유통기한 및 식품 적정온도)
  - ② 냉장고의 온도(온도측정계기 설치 여부)

#### 〈기준 온도〉

- 냉동식품 : -18℃

- 육류·어류 : 0~3℃ 이하 - 우유·유지류 : 4℃ 이하

- 과실·야채 : 7~10°C 이하(냉장보관)

- 냉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 어류 및 어류가공식품, 우유 및 우유가공식품, 달걀 및 달걀 가공식품 5℃ 이하 유지 / 과일과 야채는 10℃ 이하 보관

# 다. 선창(Hold) / 화물(Cargo)

- 1) 용수나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
- 2)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 \* 검사 시 선창의 완벽한 검사를 위해 모두 비워있어야 함
- 라. 선원실(Quarters:crew) / 사관선실(Officers) / 객실(Cabin passengers)
  - 1) 청결 관리 여부
    - ① 침구류, 의복 등의 청결상태
    - ② 적절한 환기유지
  - 2) 개인 화장실 위생적 관리
    - ① 바닥・벽・바닥과 벽 연결부위의 청결상태
    - ② 청소 및 소독실시

# 마. 갑판(Deck space) / 엔진실(Engine room)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 바. 음용수(Portable water)

- 1) 배수관
  - ① 탱크파이프 전용·겸용 여부
  - ② 주수구·통기구 관리
- 2) 계량기
  - ① 계량식 유무
  - ② 측량기 보관상태
- 3) 소독제의 량(크로로칼키 5kg이상) 다만, 생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사. 하수(Sewage)

하수시스템 누출. 오버플로우 또는 분리 여부

#### 아. 의료시설(Medical facilities)

- 1) 의약품 보관시설 및 의료폐기물 처리공간 확보 여부
- 2) 진료기록 관리 여부
- 3) 진료시설 청결 유지관리 여부
- 4) 의약품 및 예방접종 보유현황

# 자. 기타(Other)

- 1) 선내 전반의 정돈 상태 하역중의 선박을 검사할 때에는 하역장소, 하역으로 인한 통로, 바닥 등의 불 결상태는 점검에서 제외
- 2) 공중 화장실 관리
  - ① 유수량・비누 비치 여부
  - ② 청결상태

3) Ballast Tanks Ballast Water 위생·관리 상태 점검

- 4) 방제 및 위생관리 등
  - ① 크레졸 2ℓ, 살충제에어로졸300ml 12~25개(유제원액 1~2ℓ)
  - ② 쥐틀(또는 쥐덫, 끈끈이트랩 등) 5개 이상, 쥐약 500g(액체 500cc이상), 쥐막이판 계선줄당 각1개 및 비축분 2개 이상
  - ③ 예방접종 보유여부는 감염병의 국내유입 우려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외에는 참고적으로 검사 실시
    - ※ 요트 등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위 ①·②약제의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 구비 생략 가능

## 2. 점검 항목별 작성요령

- 가.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Discovery and marks of rats)
  - 1)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YES'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 나. 벌레의 서식유무(Insects)
  - 1) 벌레의 서식을 확인한 경우 'YES'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 다. 위생·관리상태(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 1) 위생·관리 상태 확인 결과 양호한 경우에는 'GOOD'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AD'

# 3. 관련조치 및 의견 작성

관련조치 및 의견 내용을 기재(예 : 소독명령, 자체소독, 시정조치 등)

# 4. 검체채취 작성요령

검체채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별로 검체번호, 검체명, 채취장소를 기재

# [참고 3]

#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민원사무명	근거 법령	처리 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 및 수수료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별지 제25호)	법 제27조	2일	신청→접수→확인 (위생검사)→증명 서발급	인터넷, 방문민원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발급수수료 : 1,000원     위생검사수수료     시행규칙'별표3'참고
<b>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b> (별지 제26호)	법 제28조제1항	2일	신청→접수→소독 →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b>소독증명서(물품)</b> (별지 제27호)	법 제28조제2항	2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사발급	<ul> <li>방문민원</li> <li>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li> <li>수수료</li> <li>증명서: 1,000원</li> <li>검사료: 실비</li> </ul>
<b>세균학적 검사증명서</b> (별지 제28호)	법 제28조제2항	5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서발급	<ul> <li>전자, 우편 방문민원</li> <li>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li> <li>수수료</li> <li>증명서: 1,000원</li> <li>검사료: 실비</li> </ul>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	법 제28조제3항	5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서발급	<ul> <li>전자, 우편 방문민원</li> <li>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li> <li>수수료</li> <li>증명서: 1,000원</li> <li>검사료: 실비</li> </ul>
소독증명서(운송수단) (별지 제30호)	법 제28조제4항	2일	신청→접수→소독 확인→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저(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32호)	법 제28조제3항	즉시	신청→접수→예방 접 <del>종→증명서발급</del>	<ul> <li>방문민원</li> <li>신청소(별지제β1호) 1부</li> <li>발급수수료: 1,000원</li> <li>예방접종수수료</li> <li>콜레라: 실비</li> <li>황 열: 실비</li> </ul>

[참고 4]

# 소독약품(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 I. 기본방향

- 철저한 검역업무 수행으로 해외로부터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Ⅱ. 적용대상 : 소독대행업체(살충·살균 소독)
- Ⅲ. 관련법령: 「검역법」제15조 및「검역법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 Ⅳ. 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명시

- 소독결과 확인 시「소독약품별 약제사용 기준」에 따라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에 명시된 약품 이외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소독약품의 환경부 승인 유무확인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 →화학제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확인

## Ⅴ. 행정사항

○ 소독명령에 대한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 '소독약품별 약제 사용 기준'을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제품명(한글)	네버바이트40(퍼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품목 감염병예방용실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05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494-32	허가일자(식약처)	2000-08-09

#### ■ 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2.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 3. 희석방법, 적용비율, 사용방법(파리, 모기, 바퀴벌레 구제에 사용할 경우)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파리	직접분무	이 약 3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²
모기	직접분무	이 약 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²
바퀴벌레	직접분무	이 약 3.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²

##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 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닥터솔루션살균소독액 2.쿼트플러스액		
(주)한성바이오켐	품목	기타방역용소독제제
2719-0001	승인일자	20190101
0835-1	허가일자(식약처)	2006-07-13
	(주)한성바이오켐 2719-0001	(주)한성바이오켐품목2719-0001승인일자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2. 희석방법 사용방법

#### 가. 적용비율

대 상	내 상 희석방법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200배 희석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나. 사용방법

-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명(한글)	델타킹유제(데카메트린)		
회사명	아성제약(주)	품목	<i>ଅପ୍ରଥି</i> ତ୍ୟ
승인번호(환경부)	2419-0043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830-10	허가일자(식약처)	2007-07-31

- 1.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말 것.
-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 가.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 나.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직접분무시	기 허가 사항과 동일 (700배)	기허가 사항과 동일 (희석액 40ml/m²)
보기 기열연막 사용시		250배 희석 (2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ml/m²
파리	직접분무시	기 허가 사항과 동일 (300배)	기허가 사항과 동일 (희석액 40ml/m²)
바리	가열연막 사용시	150배 희석 (1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ml/m²

<sup>\*()</sup> 아성제약 제공

#### 다. 사용장소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벅클린		
회사명	(주)오송	품목	김염병예방용실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42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928-10	허가일자(식약처)	2007-07-23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 가. 적용비율
  - 1) 분무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성충	직접분무 : 100~2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²
모기	유충	수량 1㎡당 본제 10~20mL를 물에 희석	에토펜프록스
	(장구벌레)	구당 TIII 당 본제 TU~20HIL글 볼에 의적	0.5~1.0ppm
성충		직접분무 : 100~200배 물에 희석	크네어 FOm I /m²
		표면잔류분무 : 25~5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²
파리	유충	유충 발생장소 : 4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2l/m²
	(구더기)	쓰레기 퇴비 : 600~8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4l/m²
	바퀴벌레	표면잔류분무(도포) : 20~3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²

## 2) 연막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가열연막 : 150배 등유에 희석	들니서OH 2 Empl /2
ᄪ	가열연막 : 150배 등유에 희석	희석액 2.5mL/m²

## 3) 가열연무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가열연무 : 1,000배 희석	
エノ	(물 1L에 이 약 0.93mL를 넣어 잘 혼합)	
πЫ	가열연무 : 80배 희석	크(서이) 20ml /m²
피리	(물 1L에 이 약 12.5mL를 넣어 잘 혼합)	희석액 30mL/m²
	가열연무 : 100배 희석	
	(물 1L에 이 약 9.43mL를 넣어 잘 혼합)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 (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제품명(한글)	롱다운플러스(델타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품목 김염병예방용실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18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494-52	허가일자(식약처)	2006-06-16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직접분무	모기	물 1L에 이 약 2.6mL를 넣어 잘 혼합(380배 희석)	희석액 79.3mL/m²
	파리	물 1L에 이 약 2.5mL를 넣어 잘 혼합(400배 희석)	희석액 79.3mL/m²
	바퀴벌레	물 1L에 이 약 8.3mL를 넣어 잘 혼합(120배 희석)	희석액 79.3mL/m²
가열연막	모기	등유 1L에 이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희석)	희석액 10L/ha
	파리	등유 1L에 이약 4.0mL를 넣어 잘 혼합(250배 희석)	희석액 10L/ha
가열연무	모기	물 1L에 이 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화석)	희석액 10L/ha
	파리	물 1L에 이 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희석액 10L/ha
	바퀴벌레	물 1L에 이 약 5.0mL를 넣어 잘 혼합(200배 희석)	희석액 10L/ha
극미량 연무 (ULV)	모기	물 9L에 이 약 1L를 넣어 잘 혼합(10배 희석)	희석액 0.4mL/m²
	파리	물 9L에 이 약 1L를 넣어 잘 혼합(10배 희석)	희석액 0.4mL/m²

##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지침(질병관리본부)"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참고 5]

# 임시격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 (설치위치) 임시격리시설은 외부와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환자 이송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환기)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춘다
- (착·탈의실)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를 위한 격리된 공간을 마련한다.
- (위생시설) 개인 화장실, 환자 세면대, 의료진 세면대가 설치된 1인 격리실을 사용한다.
- (위생물품)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손잡이가 없는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종이 타월, 손소독제)을 마련한다.
- (소통장치)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 등의 소통 장치를 마련한다.
- (구비물품) 소지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용 체온계, 혈압계 등 진료 장비를 구비한다.
- (근무자 복장) 근무자는 N 95마스크(또는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의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근무자 임무) 근무자는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한다.
- (환자식사) 환자의 식사는 검역소에서 제공하되 가급적 1회용 식기를 사용한다.
- (환자퇴실 후 관리)
  - (폐기물 관리) 격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별도분리를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독) 환자 퇴실이후에 격리실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 위 기준은 검역소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참고 6]

#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 1. 항만 검역

#### 가. 승선 검역

- 1) 제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
  - 가)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
  - 나)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다)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 라)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 마)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 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 사)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 2) 제출 방법

- 가) 선의가 탑승한 경우
  - (1) 검역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후 감염병 감시기간 내에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이 있는 경우: 탑승자 전원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직접 제출 또는 선박의 장 일괄 제출)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생략 가능
  - (3) 선의가 작성한 붙임 제3호서식에 따른 건강 확인서 함께 제출
- 나) 선의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승객 및 승무원 개인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거나 선박의 장이 일괄 제출

#### 나. 전자 검역

- 1) 제출 대상 : 전자 검역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 내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오염지역을 거주·체류·경유한 사실이 있는 승객 및 승무원
- 2) 제출 방법
  - 가) 선의가 탑승한 경우 : 승객 및 승무원 명부 제출로 갈음
  - 나) 선의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승객 및 승무원 개인이 건강상태질문서(또는 별지 제37호의2 서식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제출하거나 선박의 장이 일괄 제출

- \* 해운대리점을 통해 일괄 제출 가능
- 3) 행정 사항 : 붙임 제29호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에 명부 작성 및 보관

#### 2. 공항. 육로 검역

- 가. 제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
  -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 2)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 6)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 나. 제출 방법 : 개인이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일괄 제출
  - \*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감시 기간 이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오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건강상태 질문서 직접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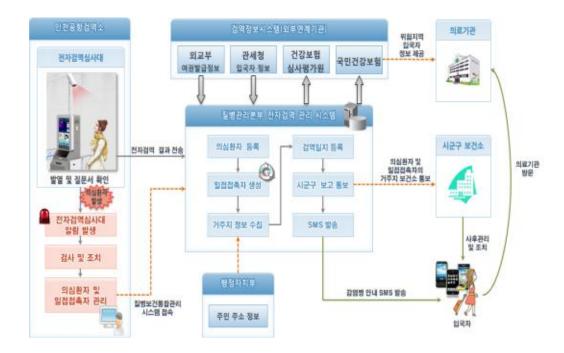
#### 3. 자진신고

- 비오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사람 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실을 신고한 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제출
- 붙임 제29호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에 명부 작성 및 보관
  - \* 건강상태 질문서를 개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객 및 승무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 가능
  - \* 건강상태 질문서의 서식은 검역감염병별 특성(증상,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 내에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별지 제9호의2서식은 2019.10.25.부터 시행

[참고 7]



# 전자검역심사대 서비스 개념도



# [참고 9]

# 선박 검역 시 소독명령 업무처리 절차

구분	관련	업무처리 개요	관련 서식	소독명령 처리 절차
검역조사	법 제12조	• 검역조사 결과,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및 번식상태가 확인된 경우 소독 명령	• 검역조사서	소독시행 명령서 발급      소독 실시 계획서 접수      *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경우 생략 가능      소독 결과 보고서 접수      소독 결과 확인      소독 결과 확인
전자 검역 대상 선박 보건위생 관리	법 제15조	•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 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독명령 실시	•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선박 위생관리 검사	법 제27조	선장/선박 소유자 : 선박위생 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 관리 점검표에 따라 위생관리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서 부표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서식	